
투자활성화 대책
-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중심 -

2014. 8. 12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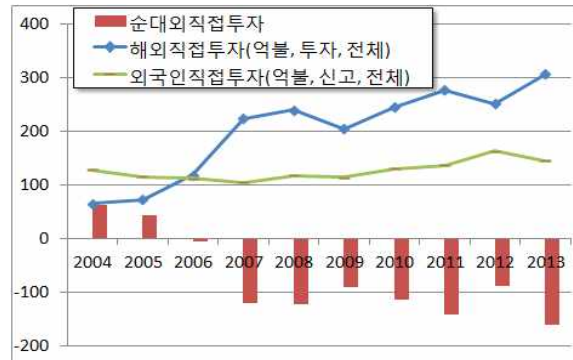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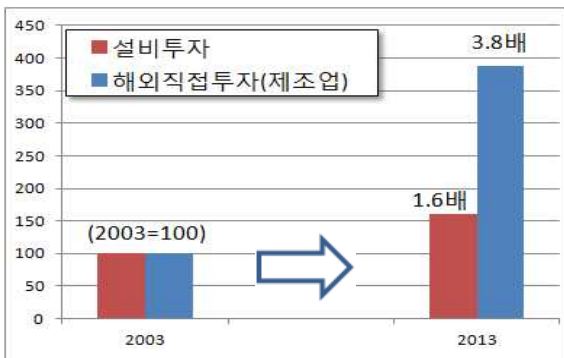
관계부처 합동

순 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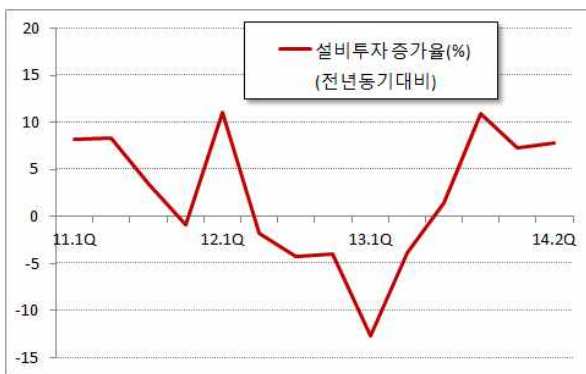
I. 투자 동향	1
II. 추진 방향	2
III. 유망서비스 분야별 육성방안	8
1. 보건·의료 서비스	8
2. 관광·콘텐츠 서비스	21
3. 교육 서비스	37
4. 금융 서비스	49
5. 물류 서비스	59
6. 소프트웨어 서비스	74
IV. 세부 추진계획	81
[참고] 유망서비스 업종별 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 ..	90

I. 투자 동향

- 지난 10여년간 우리기업들의 국내투자는 부진한 가운데 해외 투자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
 -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략적 투자의 영향도 있으나, 높은 생산 비용, 불합리한 규제 등 국내 투자환경이 미흡한 데에도 기인
 - 반면, 외국인의 국내직접투자(FDI)는 담보상대 지속



- 작년부터 적극적인 투자활성화 대책 등으로 설비·건설투자 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되었으나, 여전히 추세는 불안정



- 주력 제조업의 경우 투자여력에 한계가 있는 상황
 - (자동차·반도체) 높은 생산비용 격차로 해외투자 위주로 전환
 - (조선·화학) 구조조정 및 업황부진 등으로 신규 투자 어려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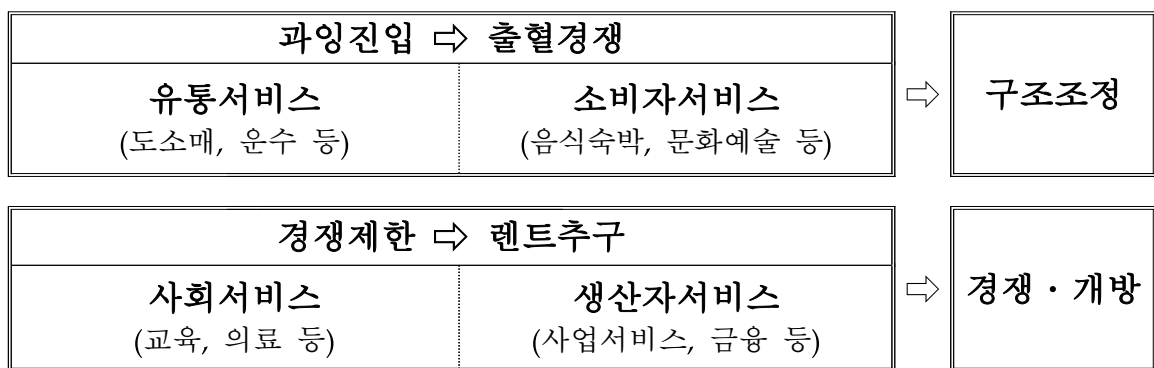
⇒ 국내투자 촉진을 위한 전반적인 투자환경 조성 노력과 함께 이번 대책은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투자활성화에 중점

II. 추진 방향

- ◇ 선택과 집중으로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제고 효과가 높은 유망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추진
 - 보건·의료, 관광, 콘텐츠, 교육, 금융, 물류, SW 등 7개 분야

(1) 서비스산업의 현주소

- 국내 서비스산업은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분야이나, 아직도 생산성이 낮고 대외 경쟁력도 취약한 상황
 - 서비스산업의 고용비중이 70%이나 부가가치는 60%수준에서 정체되면서 1인당 생산성은 제조업의 절반 수준
 - 선진국에 비해서도 고용·부가가치 비중이 크게 낮은 상황
- 과잉진입된 저임금업종과 경쟁제한적 과보호 업종이 병존



-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향상 지연은 최근 우리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성장정체, 양극화 등의 요인으로 작용

* 서비스산업의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'90년대 수준을 유지했다면 경제성장률이 약 0.6%p 추가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(KDI, '13.11월)

[2] 기본 방향

[성과 목표]

□ 성과확보를 위해 유망서비스 분야별 핵심 성과 목표를 설정

분 야	대 상	'13년	'17년
보건·의료	해외환자 (연환자)	21만명 (65만명)	⇒ 50만명 (150만명)
관광·콘텐츠	해외관광객	1,218만명	⇒ 2,000만명
교 육	우수 외국대학 유치 (분야별 세계 20위권)	-	⇒ 3개 유치
금 융	금융업 부가가치 비중	6.7% ('12년)	⇒ 8.0%
물 류	물류산업 매출	92조원	⇒ 135조원
소프트웨어	SW 수출	40억불	⇒ 70억불

[3대 전략]

- ① (신시장 창출) 새로운 수요와 산업 창출, 해외시장 진출, 해외 고객 유치 등을 통해 한정된 국내시장에서의 Zero-sum 상황을 Positive-sum 상황으로 전환하여 이해관계 대립 완화
- ② (맞춤형 지원) 서비스분야의 다양한 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맞춤형 대책 마련·추진
 - 경쟁이 제한적인 분야는 개방과 경쟁을 촉진하고, 산업기반이 미비한 분야는 재정·금융지원 등을 통해 인프라 확충
- ③ (성공사례 확산) 프로젝트별 원스톱 지원으로 실제 성공사례를 도출하여 제도개선에 대한 막연한 우려를 완화하고 성과를 확산

[양방향(Two Track) 접근]

① (Track 1) 투자·일자리 성과 구체화를 위한 프로젝트 지원

- 그동안 무역투자진흥회의, 규제개혁장관회의 등에서 이미 발표된 대책이 실제 투자와 일자리의 성과로 나타나는 성공사례 도출
- 파급효과가 큰 분야별 투자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유망서비스 T/F에서 원스톱 서비스 제공

② (Track 2) 제도개선 및 기반조성을 위한 새로운 과제 발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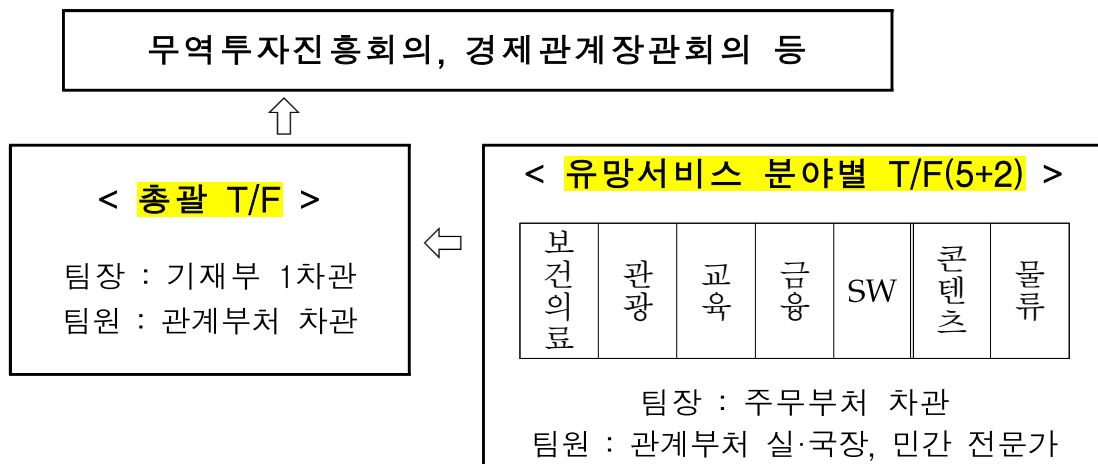
- 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진입 및 영업규제 개선
- 재정·금융 등 인센티브 강화, 인력양성 등 성장기반 조성
- 서비스수출 확대, 해외수요의 국내 전환 등을 위한 제도 정비

[추진 체계]

□ '14.1.6일 대통령 신년구상 발표 이후 구성·운영 중인 「유망서비스 분야별 관계부처 합동 T/F(5+2)」를 적극 활용

- 의료기관, 교육기관 등 현장의 애로와 대한상의, 전경련 등 경제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과제 발굴 및 성과 점검

〈유망서비스 산업 육성 추진 체계〉



(3) 대책의 골격 및 기대효과

□ (과제 구성) 이번 대책은 보건·의료, 관광, 콘텐츠, 교육, 금융, 물류, SW 등 7개 분야 총 135개 과제로 구성

○ 유형별로는 성과구체화 프로젝트 51개, 제도개선·기반조성 84개

분 야	성과구체화 프로젝트	제도개선·기반조성	계
보건·의료	6	24	30
관광·콘텐츠	9	22	31
교육	8	5	13
금융	12	6	18
물류	8	20	28
소프트웨어	8	7	15
계	51	84	135

○ 조치 필요사항별로는 법률 제·개정 23개,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·개정 27개, 비법령사항은 85개

합 계	법률 제·개정	시행령·시행규칙 제·개정	지침·고시 등 제·개정	비법령사항 (금융·재정지원* 등)
135	23	16	11	85

□ (기대효과) 이번 대책으로 약 15조원 이상의 투자효과*가 기대

* 산업연관 분석 등 감안시 약 18만명 수준의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

○ 다양한 정책과제 등을 통해 추가적 투자효과와 더불어 유망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기대

(4) 집행·성과관리

□ 대책 발표 즉시 소관부처별로 정밀한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수립

- 과제별로 부처간 조치사항과 추진시기 등을 명확히 설정
- 분야별 정책설명회, 현장방문, 관련업계 간담회 등 정책체감도 제고를 위한 세부방안도 함께 마련

* 8월중 각부처 장관 현장방문 계획(예시):

(기재부) 인천 경제자유구역(복합리조트 건설예정지, 인천자유무역지대 등)

(복지부) 해외환자유치 우수병원

(문체부) 중국인관광객 선호지역(명동·제주도 등), 한강 일대 등,

(교육부) 대학기술지주회사, (금융위) 기술금융지원 우수 금융기관,

(국토부) 택배배송센터, (미래부) SW융합 클러스터

- 주관기관·협조기관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·운영

- 특히, 다수부처·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세부추진 계획 마련이 필요한 중점추진과제는 과제별 별도 TF 구성·운영

* (예시) 한강 및 주변지역 관광자원화 마스터플랜 수립,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한 국제테마파크 유치 등

□ 조기에 대책의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속도감 있게 집행

- 행정법령, 비법령사항 등 행정부 내부 절차는 조기 마무리
- 법률 제·개정 사항은 대국회 협력 강화 등 통해 조속한 시일내 입법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

□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하여 추진성과를 월별로 점검하여 보완

-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현장점검을 위해 설치·운영중인 KDI 「국민점검반」 활동과 연계하여 점검

정책
목표

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발굴

추진
전략

3대 추진 전략

신시장 창출

맞춤형 지원

성공사례 확산

접근
방식

양방향(Two Track) 접근

[Track 1]
성과 구체화 프로젝트

[Track 2]
제도개선·기반조성

보건·
의료

-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지원
-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
-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

- 해외환자 유치
- 의료분야 해외진출 확대
- 보건의료 연구 활성화

관광·
콘텐츠

- 복합리조트 설립 지원
-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한 국제테마파크 유치
- 남산·설악산 등에 친환경 케이블카 설치

- 중국관광객 친화적 관광환경 조성
- 한강주변지역 관광자원화

교육

- 전문분야 특화 외국교육기관 유치
- 대학기술지주회사 활성화

-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
- 사내대학 활성화

금융

- 기술금융 지원
- 유망서비스산업 지원펀드 조성

- 퇴직연금 제도개선
- 지주회사 전략기능 활성화

물류

- 물류단지 공급 확대
- 인천공항 물류허브 기능 강화

- 전문물류기업 육성
- 택배산업 선진화

소프트
웨어

- SW 융합 클러스터 조성
- SW 융합 신산업 창출

- 중소기업·농수산물 전용 공영 TV홈쇼핑 채널 신설
- SW기업 해외진출 확대

Ⅲ. 유망서비스 분야별 육성방안

1 보건·의료 서비스

1-1 성과 구체화 프로젝트

(1) 중소·중견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지원

- (현황)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기로 결정(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, '13.12월)

< 4차 투자활성화 대책 중 의료 자법인 관련 내용 >

- (현황) 그간 진단·치료 등 고유목적사업뿐 아니라 의료호텔·의료인 교육 등 부대사업도 의료법인이 직접 관리하여 경영의 전문성 저하
- (개선방안) 자원조달수단 다양화, 경영효율성 확보, 연관산업과 융복합, 해외진출 활성화 등을 위해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허용

- 자법인 설립에 관심있는 의료법인들의 프로젝트 실행과정에서 기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

- (개선방안) 프로젝트별 맞춤형 애로해소를 통해 자법인 성공 사례를 창출

① S의료법인의 메디텔 자법인

< 프로젝트 개요 >

- ▶ S의료법인은 인천시에 총 1천억원 규모의 해외환자 유치목적 병원(심장·미용 등)을 건립 예정
 - 건물 일부층에 자법인 형태의 메디텔을 설립하고자 외부투자 유치 추진중
 - 메디텔 일부 공간은 외국인환자 유치효과가 큰 성형외과 등에 임대 추진

- 메디텔업 등록을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 필요*하나, 신설 자법인은 유치실적이 없어 설립 불가

* 현행 관광진흥법시행령 규정은 모법인이 메디텔을 직접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서울 연3천명, 서울 이외 연1천명의 해외환자 유치실적 요구

⇒ 자법인을 통한 메디텔 등록시 모법인의 유치실적을 자법인 실적으로 인정(관광진흥법시행령 개정, '14.8월)

- 메디텔과 의료기관간 시설분리 기준이 엄격하게 규정*되어 있어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과도한 비용 소요

* 기존 「의료관광호텔의 시설분리 기준(안)」은 메디텔과 의료시설 별도 건물 설치 또는 동일 건물내 설치시 별도의 계단·엘리베이터 설치 의무화

⇒ 의료기관과 메디텔이 다른 층에 설치되거나, 같은 층이라도 격벽 및 별도 출입구가 있는 경우 동일건물내 입주 허용
(문체부고시 반영, '14.8월)

- 종합의료시설내 의원급 의료기관 입주가 불가능하여 진료과목 확대를 위해 진료과목을 직접 설치해야 하는 부담 발생

⇒ 종합의료시설 내 의료관광호텔에 의원급 의료기관 임대 허용
(의료법시행규칙 개정, '14.8월)

② S의료법인, B의료법인의 해외의료진출 특수목적법인

< 프로젝트 개요 >

- ▶ S의료법인은 베트남 호치민시에 현지병원 건립을 추진중
- ▶ B의료법인은 두바이 국립재활원 위탁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현지 투자자와 결합하여 재활병원·검진센터 건립을 계획중

- 관련규정이 불명확하여 해외 직접진출 및 해외진출 목적의 국내 특수목적법인 지분투자 가능 여부가 불확실

⇒ 의료법인의 해외 직접진출뿐 아니라 국내 특수목적법인 등을 통한 국외법인 투자가 가능토록 허용범위, 절차 등에 대한 규정 마련
(「의료법인 해외진출의 절차 및 방법 안내서」 제정, '14.8.1)

- 의료법인의 재정여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민간펀드 등도 기존 성공사례 부족 등의 이유로 투자에 소극적

⇒ 해외진출 목적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을 추진하고 초기 성공사례 창출을 위한 컨설팅 제공

③ H의료법인 해외환자유치 자법인

< 프로젝트 개요 >

- ▶ 제주도 소재 H의료법인은 병원과 호텔이 결합된 복합의료단지를 운영하면서 수(水)치료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해외환자를 유치
 - * H병원 해외환자 유치 규모(명) : ('11년) 555, ('12년) 1,107, ('13년) 1,617
- 최근 호텔 리노베이션을 거쳐 신규개장('14.2월)하고 숙박업·해외환자유치업을 부대사업으로 운영중 → 향후 건강기능음료 등 연관사업 추진 예정
- 강정마을 크루즈가 개항('15.6월)되면 해외 의료관광객이 더욱 늘어날 전망

- 해외환자 유치, 연관사업 등 **종합서비스 제공**을 위한 자법인 추진

⇒ 의료법인 자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**부대사업 범위**를 건강기능식품·음료 연구개발까지 확대(의료법 개정, '14년 하반기)

□ (기대효과) 의료법인 자법인 성공사례를 창출하여 **사업 형태와 재원조달 수단 다양화, 경영효율성·투명성 제고**에 기여

○ 연관산업과의 융복합 촉진으로 **새로운 고부가가치, 신시장(해외 진출 포함), 양질의 일자리** 창출

- ▶ S 의료법인 메디텔 자법인 : 80억원 규모, '15.3월 착공 예정
- ▶ S 의료법인 해외진출 특수목적법인 : 150병상/450억원 규모(1단계) '15.4월 착공
- ▶ B 의료법인 해외진출 특수목적법인 : '16년 착공 예정(외부자본 조달시)
- ▶ H 의료법인 해외환자유치·건강기능음료 자법인 : '15년 자법인 설립

(2)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

□ (현황) 경자구역과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는 마련('12.10월)되었으나, 아직 유치사례 전무

□ (개선방안) 관련 규제 개선 등을 통해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 사례 창출 지원

① 경자구역(송도)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

< 최근 동향 >

- ▶ 대학병원 등에서 송도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사업 참여에 관심
 - 외국 자본 유치 + 국내 의료자원 활용을 통해 종합병원 규모의 투자 개방형 병원을 설립하여 외국인환자 위주의 종합적 의료서비스 제공

- 외국인 의사 고용의무 등 거버넌스 관련 규제로 인해 병원들의 적극적 참여가 어려운 상황

< 경자구역 · 제주도의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규제 >

경자구역	제주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외국 의사 10% 이상 고용 · 병원장/진료의사결정기구의 50% 이상 외국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외국 의사 종사 가능 -

⇒ 경자구역 투자개방형 병원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여 **제주도와 경자구역 간 규제 차이 완화**

(경자구역법 시행령, 경자구역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절차 규칙 개정)

② 제주도 제1호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

< 프로젝트 개요 >

- ▶ 중국의 (주)CSC가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을 신청('13.2월)
 - 중국 관광객이 선호하는 피부·성형 서비스를 중점 제공하고 차별화된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여 의료관광객을 유치할 계획
 - 그러나 응급의료체계 미비 등을 사유로 사업계획 승인이 보류('13.8월)
- *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 절차 : 법인설립(사업자) → 사업계획서 제출(제주) → 승인(복지부) → 개설허가 신청(사업자) → 보건의료정책심의위(제주) → 개설허가(제주)

⇒ 응급의료체계 등 사업계획을 재점검하여 **승인여부를 확정**('14.9월)

□ **(기대효과)**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 사례를 조속히 창출하여 **후속 투자를 유도하고 해외환자유치 확대에 기여**

- ▶ 경자구역 : '12년 당시 송도 국제병원 설립계획(6,000억원 직접투자, 600병상 규모)
- ▶ 제주도 : 505억원 직접투자(48병상 규모) 및 100명 이상 고용효과

(3)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

□ (현황) 대학 부속병원들은 많은 의료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나, 이를 활용하고 후속연구로 발전시키는 데 애로*

* 특허 보유규모가 큰 국내 대학병원 연구수입은 전체 수입의 5% 미만에 불과

○ 대학병원은 대학의 부설기관이므로 직접 특허를 소유하거나 사업화할 수 없고, 산학협력단을 통한 자회사 설립만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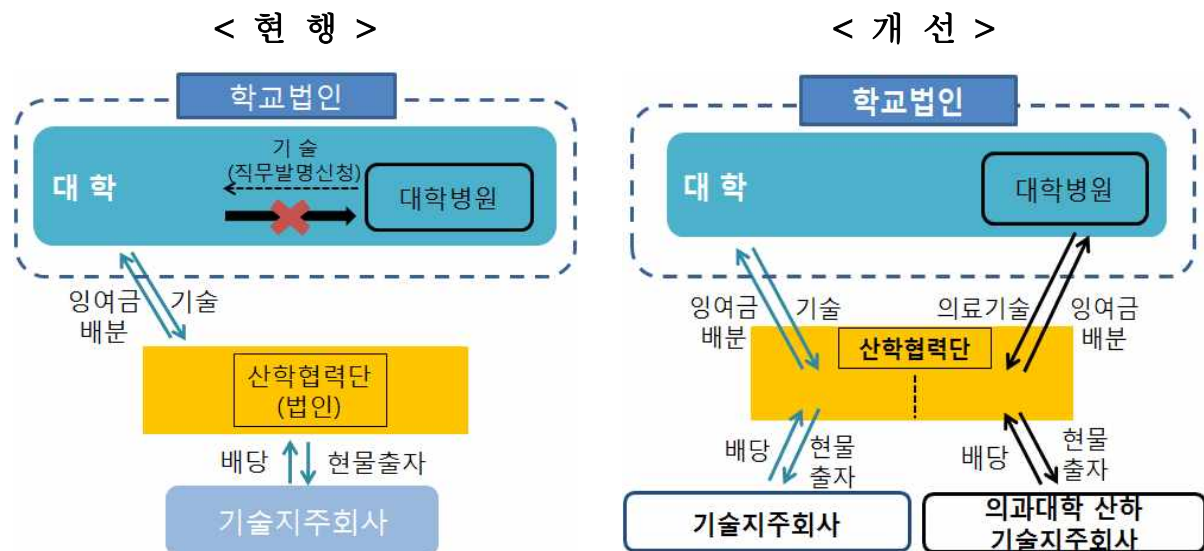
- 그러나 산학협력단은 기술 출연과 수익 배분이 학교를 통해 이루어져 대학병원과 의사들의 참여 인센티브가 미미

□ (개선방안)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의료 기술사업 수익이 병원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

○ Y, K의과대학 등 기술지주회사 설립 요건 검토·승인(교육부, '14.9월)

○ 산학협력법 유권해석*을 통해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로부터 발생한 산학협력단 잉여금의 병원 배분을 허용

* 산학협력단 지출 대상인 「대학 시설·운영비」에 대학병원 시설·운영비도 포함



□ (기대효과) 의료특허*를 활용하여 신의료기기·의료기술, 신약 등 의료관련 제품·서비스의 사업화 촉진

* 특허보유규모 : (Y대학 부속병원) 870개 (K대학 부속병원) 290개

(1) 2017년 해외환자 50만명(연환자 기준 150만명) 유치

□ (현황) 그간 비자완화, 해외환자 유치 허용, 의료 분야의 정부간 협력(G2G) 등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

- 이에 따라 해외환자 규모가 꾸준히 증가*하고 있으나 아직 태국·싱가폴** 등에 비해 의료관광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

* 해외환자 수(실환자 기준, 만명) : ('09)6 ('10)9 ('11)12 ('12)16 ('13)21

국별 해외환자(실환자 기준, 만명, '13년) : (중국)5.6 (미국)3.3 (러시아)2.4 (일본)1.7 (몽골)1.2

** 해외환자 수(연환자 기준, 만명) : (태국, '12년)250 추정 (싱가폴, '12년)85 추정 (한국, '13년)65

□ (개선방안) '(가칭)국제의료 특별법'을 제정('14년 하반기 법률안 제출) 하여 해외환자 유치를 체계적으로 뒷받침

< '(가칭)국제의료 특별법' >

- ▶ 현행 의료법 체제에서는 의료수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어 별도의 법 제정 필요
- ▶ 해외환자 유치 및 의료기관 해외진출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의료법상 규제 의 예외를 인정*
 - * (예) 외국인 환자 대상 국내 의료광고 허용,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허용 등
- ▶ 금융·세제·재정지원의 근거*를 마련하고 해외환자 유치 및 의료기관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
 - * (예) 의료호텔(메디텔) 설립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등

① (정보제공) 국가별 중점 분야*에 대한 맞춤형 진료정보 제공

* (예): 중국(성형, 피부), 러시아(고혈압, 심장), 중동(중증질환), 중앙아(소화기질환)

- 국제진료비 정보제공*을 현행 영어에서 중국어·러시아어 등으로 확대('14.8월)

* '14.3월부터 20개 주요질환 국제진료비의 중위값, 최소값, 최대값 조사·공개(국제의료협회, www.koreahealthtour.co.kr)

- 의료기관별 상담·예약·결제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시스템*을 구축하고, 해외환자 진료기관 서비스 품질에 대한 평가결과** 공개

* 관광공사 사이트에 별도 전용창 설치 (www.visitmedicalkorea.or.kr)

** 보건산업진흥원(www.medicalkorea.or.kr): 통역 서비스, 외국인 브로우서, 배상보험 가입, 국제진료실 별도 구축 여부 등 평가

② (유치업 활성화) 국내 또는 외국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환자에 대한 국내보험사의 유치행위 허용

* 국내 또는 외국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환자에 대한 보험사 유치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계류중('13.5월 국회 제출)

③ (해외보험 활용) 보건산업진흥원 해외지사 네트워크 등을 적극 활용하여 직불계약 확대 및 미 의료보험 상품 개발 촉진

- 국내 의료기관과 외국 보험사 간 직불계약* 활성화

* 현재 CIGNA, UHI, AETNA, BCBS, FSBP, IMG, MSH-China, Daman(UAE) 등이 약 15개 국내병원과 계약 체결(서울성모병원, 서울대병원 등 참여)

- 미국 직장의료보험 중 자가의료보험(self insured plan) 상품으로 한국의료 이용 모델*이 개발되도록 해외보험사와 협의

* 한국의료 이용시 재정적 혜택(자기부담금 면제, 한국여행 관련 비용 제공 등) 부여

[참고] 美 오바마 케어의 영향

- '14년부터 의료보험 의무가입(미가입시 벌금형 부과) 시행으로 저렴한 보험상품 수요 증가(현재 의료보험 미가입자 3,200만명)
- ⇒ 해외환자의 한국 유치 기회로 활용

④ (비자완화) 해외환자 급증 지역을 중심으로 비자완화 추진

- 의료비자 별도 심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불법체류·취업 가능성이 낮은 의료관광객에 대해 신속하고 간편한 비자 발급 추진('15년 상반기)
- 사우디, 쿠웨이트, 카타르 등 중동국가와 환자송출계약 체결시 제3국인 간병인에 대해서도 비자발급도 허용
- 비자발급시 혜택(전자비자 신청, 제출서류 간소화 등)을 부여하는 해외환자 유치 우수기관 지정 확대

< 최근 비자완화 추진 현황 >

- ▶ (중국) 복수사증 발급을 현행 북경·상해 戶口者 → 광저우·선전 戶口者 까지 확대('14.6월)
- ▶ (몽골) 복수사증 발급요건을 최근 2년간 2회 이상 방문 → 한국방문 경력자로 완화('14.6월)
- ▶ (러시아, 카자흐스탄)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여 무비자 입국 가능*
* 러시아는 '14.1월부터, 카자흐스탄은 '14.하반기부터 시행

⑤ (해외환자 유치기반 강화) 정부간 환자 송출계약, 해외의료진 유무상연수 등을 적극 활용

- 1인당 진료비 지출이 높은 중동 지역*과의 의료협력을 강화하여 송출환자 유치 지속 확대**

* '13년 UAE 국적 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1,771만원으로 전체 평균 진료비(186만원)의 9.5배 이상

** 환자송출계약(환자수, 진료수익) : ('13) UAE 351명, 210억원 → ('14 예상) UAE 1,000명, 1,000억원 → ('15 계획) 사우디·쿠웨이트까지 계약 확대

- 해외의료진 연수*를 확대하고, 연수인력(年 1천명) 관리를 위한 DB를 구축하여 환자 유치채널로 연계 활용('14년 하반기)

* 중동의료진 유료연수 : ('14) 사우디 20여명 → ('15) 사우디 100명 + 인근 UAE·쿠웨이트로 확대(年 300명 예상)

중국 지방정부와 의료진 연수협약 체결('14.7월, 年 20명, A병원)

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의과대학 의료인 유료연수 추진중(분당 S병원)

⑥ (의료분쟁 완화) 해외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접수,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「(가칭)국제환자지원센터」 설립(복지부, '16년)

- 불법브로커 신고센터('14.6월 설치)를 활성화하고 환자 요청시 진료비 확인을 통해 유치업체와 의료기관의 책임소재 명확화

⑦ (후속진료) 환자가 본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원활한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외 검진 및 원격의료 센터 설립*

* 4개 전략국가(UAE, 중국, 러시아, 카자흐스탄)를 중심으로 추진

□ (기대효과) '17년까지 해외환자 유치 규모를 2배 이상 확대(21만명 → 50만명)하고, 의료관광을 통한 진료수입액 1.5조원 달성

○ 아시아 최고 수준의 의료관광 중심지로 도약

(2) 의료 분야 해외진출 확대

- (현황) 국내 의료기관들의 해외진출에 대한 관심이 증가*하고 있으며, 최근 해외 대형병원 운영 수주 등 성과도 가시화

* 해외진출 현황('13.9월) : 20개국 111개 기관(피부·성형 41, 치과 16, 한방 12 등)

< 최근 해외의료진출 사례 >

- ▶ UAE 왕립 칼리파병원 위탁운영 사업자로 서울대병원 선정('14.6월)
 - 미·영 등 세계 최고 수준 병원들과의 경쟁을 거쳐 국내최초로 해외 대형병원에 병원 운영 모델을 수출한 사례
 - 임상진료, 의약품 공급, 현지 인력관리, 병원 정보시스템 구축 등 병원 운영·관리 총괄(5년간 200여명의 인력 파견, 1조원 이상의 예산 운용)
- ▶ 사우디 병원 정보시스템 구축에 국내 S병원·S통신사 컨소시엄 참여('14.6월)
 - 2년간 국가방위부 소속 6개 병원(3,000병상) 정보시스템 구축(700억원 규모)

- 그러나 아직 의원급 위주의 소규모 진출이나 개인명의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진출이 대부분이고 수익창출·현지화에 애로

- (개선방안) 의료기관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, UAE 진출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의료 연관산업 수출 확대

- ① (법적기반 구축) 최근 해외의료투자 자산범위, 신고 및 투자, 사후관리, 수익금 처리 등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

* 「의료법인 해외진출의 절차 및 방법 안내서」 제정('14.8.1)

- 향후 '(가칭)국제의료 특별법' 제정을 통해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

- ② (정책 지원) 해외진출 의료기관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등 확대

-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 및 해외진출에 대해 중소기업에 준하는 지원 제공(국제의료특별법에 반영)

- 해외진출 의료법인이 중소기업 대상 정책금융, 무역보험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 특수목적법인의 중소기업 지위 인정

- 중소병원 해외진출 지원펀드* 설립(복지부, '14년 하반기)

* 총 500억원(정부출자금 100억 + 정책금융기관 등 공동출자 400억) 규모

- 글로벌 협력펀드*, 유망서비스산업 지원펀드(정금공), 수은 및 중진기금 등도 활용

* 한·중동(1.5~2억불)/ 한·중(2억불) 글로벌 협력펀드 '14년 하반기 출범 예정

- ③ (원조-수출 연계) 의료분야 유·무상 원조를 사후관리까지 확대하여 의료기관 해외진출 및 연관산업 수출의 거점으로 활용
- ODA 활용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소관부처·관계기관 협의체 신설

< 유·무상 원조 - 수출 연계모델의 예 >

EDCF	• 병원건립, 초기운영비(의료장비 유지관리비 등) 지원
KOICA · KOFIH(국제보건의료재단)	• 사업타당성조사(Feasibility Study), 의료인력 연수(의료 전문가 파견, 현지인력 초청연수), 의약품 제공

- ④ (의료시스템 수출) 관련기관 간 긴밀한 협력·분업체계*를 구축하여 공공·민간 IT 시스템 수출 촉진

* 정부·보건산업진흥원·KMH : 공공발주 프로젝트 수주지원, 전략수립, 제안, 면허 등 의료기관·민간기업 : 협상, 계약, 시스템 구축·관리

- 중앙아시아, 중동 등에 공공기관 의료정보시스템* 수출 추진

* 통합전산관리시스템(심평원), 건강보험제도(건보공단), 혈액관리시스템(적십자)

- 공공기관들이 정보시스템 수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컨설팅 수수료 등 인센티브 제공

- ⑤ (지원조직 확충) 의료수출 지원 전문기관(KMH : Korea Medical Holdings)*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출자 확대

* '13.3월 해외진출에 적극적인 민간병원들과 국책금융기관들이 공동출자하여 설립

- 의료수출 확대 전략지역*에 Medical Korea 거점공관을 지정하여 해외진출 병원들의 정보수집,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

* 미국, 중국, UAE, 사우디, 카타르, 러시아, 카자흐스탄 등

- (기대효과) 의료기관 해외진출 규모와 대상 국가를 확대하여 '메디컬 코리아'에 대한 글로벌 인지도 제고

- 해외 의료진출과 연관분야 수출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중동·아시아 등에 의료 한류붐 조성

(3) 보건 의료 연구·임상 활성화

1) 신약·신의료기술 개발 촉진

□ (현황) 신약·신의료기술은 부가가치가 큰 첨단산업으로서 주요국간 경쟁이 치열한 분야

- 우리의 높은 개발기술수준*을 사업화로 연결하여 세계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긴급

* 미국 대비 기술수준은 줄기세포 치료제는 87.2%, 유전자 치료제는 81.3% [120개 국가전략기술별 기술수준 종합분석(2013), KISTEP]

□ (개선방안) 연구자 임상의 상업화 연계 지원 및 연구대상 확대

- 상업 임상 1상을 면제할 수 있는 연구자 임상 인정범위를 현행 자가줄기세포 치료제에서 모든 줄기세포 치료제로 확대 (식약처 고시 개정, '14년 하반기)

- 유전자 치료제 연구 허용 기준*을 완화(복지부, 생명윤리법 개정 추진, '14년 하반기)하고, 임상시험 참여자의 안전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보완·강화

* 현재는 ①유전질환, 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면서 ②현재 이용가능한 치료법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나 둘 중 한 요건만 충족하는 경우까지 연구를 허용

- 대체치료법이 없는 환자에게 신의료기술을 조기에 적용하기 위한 '제한적 의료기술'* 선정을 단계적으로 확대

* 안전성은 확인되었으나 신의료기술로 채택되지 못한 기술에 대해 제한적 치료 허용

- 1차로 2개 의료기술을 제한적 의료기술로 선정('14.8월) → 최대 4년간 비급여로 치료 허용

- 기초연구, 공익적 목적*이 큰 임상시험을 중심으로 통상진료비용 (routine care cost)의 보험급여 적용 검토('15년 상반기)

* 결핵, 항생제내성균, 희귀난치질환 등 연구개발이 필요한 의료분야

□ (기대효과) 임상연구 활성화 및 임상기회 확대로 신약·신의료 기술의 개발·실용화 촉진

* 세계 시장규모 전망 : 줄기세포 치료제 ('12) 33조원 → ('20) 123조원
유전자 치료제 ('12) 10조원 → ('20) 21조원

2) 연구중심병원 육성

□ (현황) 의료기관들이 진료수익에 과도하게 의존*하고 연구활동을 통한 새로운 수익기반 창출은 미흡

* 수익구조 : (美 텍사스메디컬센터) 연구62%, 기타38%
(삼성서울병원) 진료95%, 기타5%

○ 병원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연구성과의 사업화 성공을 촉진하기 위해 '14년부터 연구중심병원* 육성사업을 추진중

* '13년 총10개 병원 지정(경북대 등 대학부속병원 6개, 길병원 등 기타법인병원 4개)

□ (개선방안) 연구중심병원 재정지원*(14년 100억원)을 확대하고 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연구성과에 대한 정기평가·컨설팅 강화

○ 연구 내용 및 수준에 따른 재정 차등지원, 평가결과가 미흡한 기관은 연구중심병원 재지정 배제 등 성과중심체제 강화

○ 병원기반 R&D의 장점을 살리고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운용

□ (기대효과) 병원을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 R&D 기반을 구축하여 세계최고수준의 의료기술, 임상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

○ 의료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분야를 전략적으로 연구함으로써, 연구성과의 조기사업화 및 일자리 창출* 가능

* R&D 10억원 투자시 고용유발효과('08년, 명) : (건강산업)19.5 (전체산업 평균)16.9

(4) 의료정보 보호 및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 조성

□ (현황) 의료정보 관련 법적 기반 부재로 의료·IT 융합 및 활용 지연

- 현행 「개인정보보호법」 및 「의료법」 하에서는 시스템을 통한 의료기관간 정보교류가 불가능*

* 환자 동의 하에 의료인·의료인 간 개별적으로 진료기록 확인 및 송부만 가능

- 의료기관별 용어와 서식이 달라 보건의료 시스템 수출에 애로

□ (개선방안) 의료정보 보호·교류·활용을 위한 법적 체계 마련

- 보건의료의 특수성과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「건강정보 보호 및 활용 법률」 제정(법률안 마련, '14년 하반기)

- 정보보관방법, 의료기관간 정보교류 절차, 환자 동의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

- 보안체계 구축, 개인 의료정보의 제3자 유용 금지 등 프라이버시 보호방안 마련

- 보건의료용어 국가표준을 개발(고시제정, '14.8월)하고 공공기관부터 우선 적용 → 향후 진료의뢰서 등 서식표준으로 확대

- 공공기관*들이 보유한 국민건강 관련 통계를 연계하는 DB를 구축하여 연구목적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('16년 하반기)

* 건강보험공단, 질병관리본부 등

□ (기대효과) 의료정보 교류 활성화, 의료정보 표준화, 의료정보 접근성 개선 등으로 국민불편을 해소*하고 진료의 효율성 제고

* 현재는 “A병원 건강검진 → B병원 진료”시 B병원에서 검진을 다시 받거나, 환자가 직접 A병원에 검진결과를 요청해야 하는 부담 존재

2-1

성과 구체화 프로젝트

(1) 복합리조트 설립 지원

- (현황) 아시아 각국(싱가폴, 마카오 등)에서는 국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글로벌 복합리조트를 경쟁적으로 개발 추진
 - 우리나라에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경쟁력이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복합리조트 설립이 부진
 - 다만 영종도 지역 LOCZ社 외국인전용 카지노 사전심사 적합통보(14.3월) 등 복합리조트 설립 초기 단계
 - 복합리조트에 대한 개념정의 및 체계적인 지원체계 부재
- (개선방안) 복합리조트 육성을 위해 애로해소 및 관련 제도개선
 - 진행중인 복합리조트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원스톱으로 해소(관광TF 운영)

< 복합리조트 프로젝트(예) >

프로젝트명	투자규모	당면 애로
LOCZ 프로젝트 (영종도, '18년 개장)	0.7조원(1단계) 1.5조원(2단계)	• 진입IC 개설, 영종역사 신설(14.12월) 등 인프라 지원
파라다이스 (영종도, '17년 개장)	1.9조원	• 실시계획 승인, 경관심의(고도제한) 등 인허가절차 신속 지원
드림아일랜드 (영종도, '20년 개장)	0.4조원(1단계) 1.6조원(2단계)	• 사업계획/실시계획 승인 • 진입도로 등 인프라 지원
신화역사공원 (제주도, '17년 개장)	2.6조원	• 건축인허가 등 신속 지원

- 복합리조트 육성을 위해 **관련 법률을 정비**하고 **마스터플랜 등 체계적인 추진방안 마련**
 - 복합리조트 연구용역('13.11월~'14.9월) 결과를 바탕으로 **마스터플랜 마련**('14.12월)
 - 체계적인 복합리조트 설립을 도모하기 위해 **공모방식의 카지노 허가 사전심사제 도입**(경자법 개정, '14년 하반기)
- 법 개정 후 외국인전용 카지노 사전허가 사업자 추가선정을 위한 **공고절차 진행**('15년 상반기)

< 복합리조트 마스터플랜(안) 개요 >

- ① **복합리조트의 개념과 요건***을 법률에 규정하고 인센티브 장치 마련
 - * 예시 : 일정규모 이상 & (필수) 호텔, 국제회의시설, (선택) 카지노, 공연장 등
 - [해외 사례] 일본의 경우 복합리조트(integrated resort)를 '숙박시설, MICE 시설,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적인 관광시설'로 정의
- ②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**복합리조트 개발 프로세스 확립**
 - * (예) 공모→개념요청서(RFC) 평가→제안요청서(RFP) 평가→복합리조트 허가
 - **개념요청서(RFC)/제안요청서(RFP) 가이드라인 및 심사기준 마련**
 - 카지노 허가 외국인투자자 자격요건 중 **신용등급 관련 기준 개선**(14년 하반기, 경자법 시행령 개정)
 - * 신용등급 '투자적격(BBB등급 이상)' 미만인 경우에도 종합적인 자금조달 능력 등 감안
 - 개발계획 변경, 실시계획 승인 등 **인허가절차 신속 진행**
- ③ **지역별 예상수요, 실제투자 의사** 등을 감안하여 복합리조트 유치 **공모지역 선정**
 - '선택과 집중' 원칙하에 **집적화 도모**

(2)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한 국제테마파크 유치

- (현황) 수자원공사는 '07년부터 송산 그린시티(화성) 부지에 국제 테마파크 유치를 추진
 -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민간사업자가 당초 투자계획을 철회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답보상태
 - * '11.7월 수자원공사-사업자간 부지가격에 합의했으나, 사업자의 외자 유치 실패 및 계약금 미지급으로 '12.9월 계약 무산

- (추진방안) 공모방식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제테마파크 유치 재추진
 -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종합 평가가 가능토록 공모방식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 추진('14년 하반기)
 - * 산업입지법 개정(안)이 의원입법으로 14.6월 국회제출
 - 국제 IR을 실시하여 잠재적 투자수요 유인
 -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금융지원, 인프라 지원,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등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 추진
 -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투자능력 등 경쟁력을 갖춘 사업 권소사업 선정

- (기대효과)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을 통해 외국인 관광기반 확충
 - 국제테마파크 조성으로 대규모 직접투자 및 송산 그린시티 개발 활성화** 기대
 - * 07년 MOU체결 당시 투자규모: 127만평, 5.4조원 규모
 - ** 송산그린시티 전체 1,682만평중 매각된 용지는 5만평에 불과

(3)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

- (현황) 관광객유치 등을 위해 관광명소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고자 하나 환경규제, 부지 확보 문제 등으로 애로
 - 양양군의 경우 설악산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였으나, 국립공원위원회의 두 차례 심의('12.6월, '13.9월) 결과 모두 부결
 - 동위원회는 설악산의 케이블카 추가설치 필요성은 인정하나, 현행 사업계획은 케이블카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
 - * 주요 부결사유: 노선문제, 교통체증, 지자체 재정부담 등
 - 서울시는 신규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 중이나 부지 확보 문제 등으로 답보 상태
 - 현재 운영중인 남산 케이블카는 수송인원이 한정되고 관광객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위치
- (개선방안) 애로요인 해소, 컨설팅 제공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착공 지원
 - 양양군은 케이블 노선 변경 등 부적합 사유를 보완하여 케이블카 설치 계획 변경안 제출('15년 상반기)
 - 친환경 공법 적용, 탐방예약제, 산정상 통제시스템 구축 등 환경 관련 보완방안 강구
 - '15년 하반기 중 케이블카가 착공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조속히 완료 추진
 - 남산 곤돌라형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서울시와 협의 추진
 - 사업비·운영비 및 필요시 대체 부지 지원
 - 케이블카 조성을 원하는 전국지역을 실태조사하여 환경친화적 케이블카 설치 방안 강구(관계부처, '14년 하반기)
 - * 경남·전북·전남·충북·강원·울산 등에서도 케이블카 설치 희망

- (기대효과) 케이블카 설치로 직접 투자* 이외에도 해외관광객 유치,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간접적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

* 양양군의 경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약 400억원 투자 예상

[국내 사례] 통영 케이블카('08.4월 개장)의 경우 '13년도 137만명이 방문하고, 연매출액 100억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
(4) 무역센터 일대 한류중심지화 추진

- (현황) 무역센터 일대는 한류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 보유

- 무역협회는 한류관련 대규모 문화행사(C-Festival, '15.5월)를 개최하고자 하나, 제도적 애로사항*을 제기

* 옥외공간 공연 허용, 전시장 내 휴게공간 조리음식 판매, 미디어파사드 상영 등

- C-Festival을 계기로 무역센터 일대를 한류중심구역으로 육성할 필요

- (개선방안) 무역센터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하고, 관광특구를 한류중심구역으로 육성

- 관광특구 타당성 검토, 진흥계획 수립 등 절차를 거쳐 무역센터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 추진(서울시, '14.11월)

* 무역센터 관광특구용역 컨설팅 완료(COEX, 9월) → 관광특구진흥계획 수립·신청(강남구, 10월초) → 관광특구 지정(서울시, 11월초)

→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제한 완화, 호텔 업자 공개공지 사용 허용, 자동차의 도로통행 제한 등 가능

○ 관광특구(현재 전국 28개) 활성화를 위해 **관련 규제 추가 완화**

- 관광특구내 공개공지에서 공연전문기업, 식음료전문기업 등도 **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**(문체부, 관광진흥법 개정, '15년 상반기)

* 현재 호텔사업자만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공연·음식 제공 가능

- 전시장내에서 간단한 조리음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**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완화**(식약처,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, '15년 상반기)

- 관광명소화 추진을 위해 미디어파사드* **영상 연출시간 연장**
(시간당 10분 이내 → 20분 이내), (서울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 관리 조례 개정, '14년)

* 건물 외벽에 LED 조명을 비춰 다양한 콘텐츠 영상을 표현하는 기법

○ C-Festival 활성화를 위해 등 **유관기관**(관광공사, 콘텐츠진흥원 등) **참여 독려, 온·오프라인상홍보, 스토리텔링*** 등 **One-Stop 지원**

* (예) C-Festival 스타 조형물 설치 등

○ **한전 부지를 활용한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한류 중심지화 추진**

□ **(기대효과) 관광특구를 한류·문화융성 공간으로 조성하고 C-Festival*의 성공적 개최 도모**

* 행사기간동안 외국인 관광객 30만명 유치 목표

(1) 중국관광객 친화적 관광환경 조성

- (현황) 소득수준 상승, 한류 열풍 등으로 중국 관광객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당분간 급증추세 지속 전망

* 중국관광객(만명) : (05)71→(08)117→(10)188→(13)433→(14.1~6)267

- 기존 쇼핑위주의 관광에서 체류형 고급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해 중국관광객 친화적 관광환경 조성이 중요

[중국관광객 불편사례] 영어와 한국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개별여행을 계획했으나 여행 정보 부족, 여행자 보험 미가입, 고가 로밍(Roaming), 맛집·관광지 정보 및 안내판 부족 등으로 애로 호소

- (개선방안) 중국관광객 입장에서 언어불편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패키지 프로그램 강구

- 중국인 관광객 전용 케이블 TV 채널 신설(아리랑TV, '15년)

* 현행 케이블 TV 채널에서는 중화TV에서 중국현지 방송(CCTV, BTV 등)을 단순 재송출

< 케이블 TV 프로그램(예) >

- ▶ 주요 관광주제별(쇼핑, 테마파크, 어트랙션, 고궁 등) 소개
- ▶ 세일행사·축제·공연·문화행사 등 최신 이벤트 안내

- 재외공관 방문없이 단체관광객 비자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비자 제도를 시행하고 실행체계 구축(법무부, '15.1/4분기)

- 불법체류, 고용시장에 영향 등을 고려하여 중국인관광객에 대한 비자제도 개선을 위한 추가방안 강구

- 관광품질 제고를 위해 중국인 여행객 대상 여행자보험을 개발하여 제공

- 정책당국·중국관광객 여행사·보험사간 실무협의회 구성 → 보험상품 개발 → 중국관광객 직판·여행사 연계 판매

- 편리하고 저렴하게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천공항에서 **여행자 전용 SIM카드 판매 추진**
- 중국인 관광객 선호지역(명동·제주도 등)에 대중교통 도착시스템 (버스·지하철 등), 도로표지판 등에 **중국어 표기 신설·확대**
- 우수음식점 가이드북을 선정하여 **중국어판 책자 및 모바일 앱을 제작하여 유무상 제공**(관광공사, '14년)
- 중국관광객들에게 **'다시 찾고 싶은 대한민국'**을 만들기 위한 **종합대책 마련**('14년 하반기)
 - 한국관광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촉진할 수 있도록 **정보제공시스템 확충**
 - * 불공정 거래행위(관행)·거래업체에 대해 사전적(事前的)으로 정보제공 강화
 - 중국인 관광객 대상 **민간 온라인예약 시스템 R&D 지원**(관광공사)
- (기대효과)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**편안하고 즐겁게 여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**

(2) 한강 및 주변지역 관광자원화 마스터플랜 수립

- (현황) 우리 한강은 넓은 강폭 등 잠재력에 비해 **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에는 매우 미흡**
 - * 한강 방문 비중(13년): 10.8%(전체 해외관광객), 13.3%(중국), 3.5%(일본)
- 반면 **파리 세느강, 런던 템즈강** 등은 고급 유람선·수상 운송 수단 운영, 강변지역에 매력있는 건축물·상업시설 조성 등으로 **필수 관광코스**로 각광
- (개선방안) **한강과 주변지역을 활용하여 환경생태를 회복하면서 볼거리·즐길거리·먹을거리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향으로 마스터 플랜 수립**(관계부처·서울시 합동, '15년 상반기)

- '한강 자연성 회복'으로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공간 조성
 - 생태거점 복원, 한강숲 조성, 자연(형) 하안 복원 등 추진
- 한강, 둔치, 한강주변지역 등 구역별 특성에 맞는 시설·환경을 조성하고 관련규제를 완화
 - (한강) 전시장·공연장 등에 대해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유�휴 시설인 한강 하중도(河中島)를 관광자원으로 활용
 - * 세빛둥둥섬(14.9월 전면개장 예정): 국제회의시설로 적극 활용
노들섬: 문화예술 중심의 랜드마크 조성(서울시 용역 추진중)
 - 소형선박을 활용한 레스토랑, 장거리 유람선 등 다양한 형태의 선박이 이용될 수 있도록 유람선 경쟁체제 도입 추진
 - 유선장 부대시설을 활용한 사업범위를 대폭 확대
 - * (현행) 레스토랑, 커피숍, 편의점 등 → (추가) 쇼핑·문화시설 등
 - (둔치)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식재규제를 완화*하고 관광휴식공간을 적극 조성
 - * 하천 수목식재 간격기준(현행 식재간격 25m)을 완화(국토부기준 개정)
 - (한강주변지역) 자연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을 만들고,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한강 주변지역과 연계 개발
 - 한강변 스카이라인 조성 및 공연·전시시설, 관광시설 등의 건축을 유도하여 수변활력 창출(서울시, '한강변 관리 기본계획' 수립 중)
- 지하통로·오버브릿지 확충 등으로 한강접근성을 제고하고 주말 셔틀버스 운영 등 연계 교통수단 마련
- 안전시설 확충 등 안전투자를 확대하고 환경수질 개선을 위한 종합방안 마련

- (기대효과)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발하고, 한강과 주변지역을 핵심 관광지로 발전시켜 국내외 관광객 유치기반 확대

(3) 산지관광 활성화

- (현황) 산지는 우리 국토의 64%를 차지하고 있으나 각종 입지·행위 제한 규제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
 - 경사도 규제, 부대시설 설치 제한 등 일률적 규제로 균형적 산지 개발이 곤란
- (개선방안) 안전, 환경을 저해하지 않고 산지와 조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산지관광 활성화 추진
 - 휴양형 호텔, 의료시설 등 힐링형 체험공간을 적극 조성하기 위해 산지관광특구 제도 도입(관계부처합동, '15.1/4분기)
 - 지자체가 특구 지정을 신청, 관계부처·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특구를 지정하면 **관련법상 규제***를 일괄 해제
 - * (예) 산지관리법, 산림보호법, 자연공원법, 초지법 등
 - 산지관광특구에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산지전용 및 개발 행위 허가 관련 **경사도·표고** 규제를 완화
 - * 산지전용허가 : 경사도 25도 이하, 표고 50% 이하에만 허용

< 산악호텔 사례 >



美 Crater Lake Lodge(1,900m)



스위스 마테 호른산 체르마트호텔(3,100m)

- 자연휴양림 가능시설 및 휴양콘도미니엄업 부대시설에 트리 하우스, 통나무집 등 추가
(산림청·문체부, 산림문화휴양법·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, '14년 하반기)
- 캠핑 수요증가에 대응하여 자연학습장 등 체험·휴양형 공원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
 - * 자연학습장: (13년)13개소 → (17년)23개소
 - 국립·도립공원 등 자연공원 정상부근 대피소(현행: 19개소, 1,292명 수용)를 20년까지 수용인원 약 50% 확대(환경부)
- (기대효과) 산지를 활용한 관광숙박시설·프로그램 확대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

(4) 외국인에 대한 휴양콘도미니엄 1인 분양 허용 확대

- (현황)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시행('10년)하고 있으나 최소분양인원 규제(5명) 등으로 관광시설 분양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
 - 제주도 지역의 경우 외국인 1인 분양이 허용('09.7월)되어 중국인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자이민이 활성화
 - * 일정규모(5~7억원) 이상의 금액을 호텔, 콘도 등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자격을 부여하고, 투자상태를 5년간 유지할 경우 영주자격 부여
 - 그러나 제주를 제외한 여타 지역은 외국인 1인 분양이 허용되지 않아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실적이 저조
 - * 제주(전지역), 평창(알펜시아), 여수(경도), 인천(영종 일부지역·송도·청라), 부산(해운대·동부산 관광단지)
 - 일부 지역의 경우 부동산 투자이민 수요가 있으나 적용대상에서 제외
- (개선방안) 외국인에 한해 1인분양을 허용하고, 투자이민제 수요를 감안하여 적용지역을 확대
 -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 제주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외국인 1인 분양 허용('14.10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예정)

- 개별분양된 경우 내국인에 대한 전매제한, 임대사업 금지 등 불법행위 방지방안 마련

○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영종도 전체*에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을 확대하고 성과를 검토하여 적용지역 확대여부 검토 (법무부 고시 개정, '14년 하반기)

* 현재 영종도 내 운북복합레저단지 및 영종하늘도시에만 한정 적용

□ (기대효과) 관광시설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촉진

○ 특히 분양률 저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창 알펜시아 등의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계기 마련

* '13년 기준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는 분양률이 28.3%로 저조

[국내 사례] 외국인 1인 분양이 허용된 제주도 지역은 '14.7월 현재 외국인 투자건수가 총 1,320건, 금액은 총 8,619억으로 투자가 활성화

(5) 관광호텔 설립 촉진

□ (현황) 그동안 특별법 제정 등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나 외국인관광객 수요 대비 미흡

○ '05~'13년 동안 외국인관광객은 102% 증가한 반면, 호텔객실수는 44% 증가

○ '16년까지 수도권 객실 부족 해소를 위해 '14~'16년간 약 2.5만개의 신규 객실(서울 약 1.7만실) 확충 필요(한국문화관광연구원, '13년)

○ 상업지역의 경우 높은 지가상승 수준*, 가용용지 부족** 등으로 호텔신축에 애로

* 서울시 주거/상업지역 지가상승률(%): 3.6/4.1('12) → 2.8/3.3('13) → 3.2/4.1('14)

** 서울시의 경우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은 전체의 4.5% 수준('13)

○ 유해시설 없는 호텔의 학교정화구역내 설립 허용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(교문위 계류중)을 추진중

□ (개선방안) 관광진흥법 개정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, 관광숙박시설 건립 촉진을 위한 추가적 방안 마련

○ 중장기 수급전망을 바탕으로 '15년말 일몰예정인 용적률* 특례 등 연장 추진('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' 효력 연장)

* 제2종 일반주거지역: (일반) 250% → (관광숙박시설 특례) 300%
제3종 일반주거지역: (일반) 300% → (관광숙박시설 특례) 400%

○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 조경면적을 현행 20%에서 일반 건축물의 조경면적(5~15%)을 감안하여 15%로 완화(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, '14년 하반기)

○ 외국인 관광객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협의하여 호텔 설립 가용부지 확보

- 인근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, 관광호텔 이용 및 개발수요 등을 고려하여 호텔건립이 가능하도록 상업지역, 준주거지역 등 확대 (관계부처/지자체, 15년 상반기 확대지역 발표)

□ (기대효과) 외국인관광객 등 숙박수요를 충족하고, 관광숙박 분야의 투자·일자리 창출 기대

* 관광호텔 1개 건립시 효과(평균 85실) : 투자 약 170억원, 일자리 약 400개

[6] 관광단지 조성 활성화

□ (현황) 숙박·레저 등 다양한 기능이 집적된 관광단지 사업이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 중('14년 현재 총 36개 관광단지 지정)이나 일부 사업 등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

* 동부산 관광단지,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 등은 토지분양 어려움으로 사업이 지연

□ (개선방안) 관광단지 용지의 원활한 분양과 승인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위해 관련 제도개선 추진

- 관광단지 사업시행자가 공공법인*인 경우에도 조성토지를 현행 감정가격 대신에 조성원가로도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 (관광진흥법 개정, '14년 하반기)

- 법령상 처분가격에 관한 규정이 없어 민간 사업시행자는 제한 없이 처분가격을 정할 수 있으나 공공법인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등을 유추 적용하여 감정가격으로 분양(감사원 감사결과 반영)

- * 산업단지내 시설용지의 경우 조성원가로 분양하도록 규정 (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)

- 관광사업계획 승인시 협의요청 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협의로 간주(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, '14년 하반기)

- *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법에 따라 개발사업 승인시 협의요청 받은 소관기관의 장이 30일 이내 의견 미제출시 협의로 간주

□ (기대효과) 관광단지 분양 촉진 및 민간투자 활성화 도모

[국내 사례] 동부산 관광단지(시행자: 부산도시공사)는 '05.3월 관광단지 지정 후 9년이 경과하여도 전체 면적 중 60%만 분양('14.7월 기준)
→ 조성원가 처분이 허용될 경우 잔여용지(3,600억원) 매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

[7] 자연휴양림 이용편의 제고

- (현황) 레저 인구 증가, 건강에 관심 고조 등으로 국민들의 자연휴양림 선호가 크게 증가

* 국유 자연휴양림 이용률(주말): ('06) 42%(57%) → ('10) 58%(79%) → ('12) 70%(88%)

- 자연휴양림 운영주체별로 예약사이트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이용불편 초래

구분	운영주체	예약방식
국유 (40개)	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	인터넷 예약(선착순) * 매주 수요일 6주후 일주일 기간 예약
공유 (98개)	광역·기초지자체(직영) 지역사무소·관리공단(위탁)	휴양림별로 인터넷 및 전화 예약(선착순)
사유 (18개)	민간사업자	휴양림별로 인터넷 및 전화 예약(상시)

- (개선방안) 국민들이 자연휴양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

- 국·공유 자연휴양림에 대해 예약 및 대금결제 가능하고 사유 자연휴양림과 연계하는 '통합 온라인 자연휴양림 예약 시스템 구축'(산림청, '16년)

- 수목원, 치유의 숲 등으로 이용대상 확대 추진('17년~)

- 다수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현행 선착순 예약시스템의 추첨제 전환, 예약가능 횟수 제한 등 추진

* 국립 자연휴양림의 경우 성수기(7.15~8.24) 동안 추첨제를 시행

- 건강한 국민 여가활동 기회 확충을 위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자연휴양림 확대(산림청, 156→180개, '17년)
- (기대효과) 다양한 자연휴양림에 대한 온라인예약시스템 구축 등으로 수요자 편의 제고 및 지역체류관광 활성화

(8) 스포츠·컨벤션 시설 등 유휴시설 활용 촉진

- (현황) 월드컵, 엑스포 등 대규모 국제행사·회의 개최후 유휴시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
 - 월드컵 경기장(10개)중 5개 경기장(대전, 제주 등)은 적자 상태
- (개선방안) 운용방식, 수익구조 등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거쳐 민간위탁 활용 등 유휴시설 수익 창출 방안 마련(문체부, '15년 상반기)
 - 민간위탁 등을 통해 K-POP 공연, 콘서트, 스포츠 행사 등으로 적극 활용
 - 전국단위 유휴 체육시설에 대한 임대방식, 임대가능 날짜·행사종류 등을 종합 제공하는 '시설정보 종합포털' 개설·운영(문체부)
 - * ('15년, 시범사업)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이트내 전용창 설치, 사이트 운영기관-체육시설 운영기관(약 20개소)간 협업체계 구축 → ('16년~) 체육시설운영기관 확대
- (기대효과) 유휴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기존의 용도 이외에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국민의 여가활동 기회를 확대

(1) 글로벌수준의 외국교육기관 유치

- (현황)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('06년) 이후 일부 유치성과 달성
 - 외국교육기관이 경제자유구역에 개교하였으나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대학 유치에는 미흡
 - * 프레드리히알렉산더대('11.3월), 뉴욕주립대('12.3월), 조지메이슨대('14.3월) 등
- (개선방안) 우수교육기관 유치를 위해 지원제도를 정비하고, 유치에 애로가 되는 걸림돌을 적극 해소

① 글로벌 수준의 특화 외국교육기관 유치

< 외국교육기관 유치 추진현황 >

- ▶ 최근 패션(미 F대)·호텔경영(미 N대)·음악(러 S음대) 등에 특화된 우수 학교들이 국내진출에 관심을 표명
 - 미 F 패션 분야 특화대 ('13.7월부터 유치협상 진행중)
 - 미 N 호텔경영 특화대 ('13.10월 인천경자청장-N교 총장 상호의향서 체결)
 - * 싱가포르 분교 철수계획('14.9월 예정)에 따라 우리나라와 중국 해남도 등 타지역으로 진출을 고려중
 - '14.5월 본교방문 결과, 탄력적 학제운영(예: 3년 분교+1년 본교)을 희망
 - 러시아 S 음악대학 ('13.10월 인천경자청장-S교 총장 MOU 체결)

- 旣진출 외국대학의 학과 추가 심의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본교 방문수업 등 탄력적 학제운영 보장

- * 학과 추가시 심사기간 단축 및 구비 서류간소화 지침 마련
(외국교육기관 설립심사 매뉴얼 개정, '14.6월)

- 우수 외국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최대 400억수준으로 지원 (5년간)하는 등 유치 인센티브를 확대

* 국제평가 등을 감안하여 차등지원폭을 2 → 5배로 확대
(외국교육기관 유치지원 운영 요령 개정, '14.6월)

- 서한 발송, 관계부처 합동 방문 등 적극적 유치활동 추진

②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차별 해소

< 외국교육기관 차별사례 >

- ▶ 국내에 진출한 N 대학교 국내분교는 학교운영 및 학생편의 등에서 각종 장벽에 직면
 - N 대학교 재학생은 대학재학을 이유로한 입영연기가 곤란하고 예비군 훈련도 지역예비군에 편성되어 학업 지속의 장애요인으로 작용
 - 국가 R&D 사업 참여시 한글로 된 사업계획서 등으로 인해 참여가 실질적으로 제한
- ▶ 외국교육기관의 특수성과 자율성(교육과정, 학사운영 등)을 확대하기 위한 고등교육법, 사립학교법 등의 적용 배제 규정이 오히려 학생·학교로서 보편적으로 누려야할 사항까지 일괄 배제하는 문제 초래

- 외국교육기관 재학생도 입영연기가 가능토록 개선(병역법 유권해석)
- 외국교육기관 재학생도 예비군 훈련에서 국내 대학 재학생과 동일한 훈련제도 적용(예비군 교육 훈령 개정, '14.12월)
- 국가 R&D사업에서 외국교육기관을 참여시키고, 영문서류 제출 허용 등 수요자 친화적 정책 추진
- 학생, 교직원, 학교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사례 지속 발굴·개선

③ 외국교육기관 설립주체 확대

< 설립주체 애로문제 >

- ▶ 외국교육기관의 국내진출 허용(06년) 이후 외국교육기관 본교의 직접 진출만을 허용
 - 지난해 12월(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) 외국학교법인과 국내학교법인 간의 합작설립 허용방안을 마련

- 외국대학이 일정조건하*에 국내 자법인(외국학교법인 100% 출연), 합작법인 등 법인(비영리)을 설립하여 국내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 (외국교육기관 특별법 개정안 국회제출, 15년 1/4분기)

* 안정적 학습권 보호, 교육의 질 확보 등을 위해 평판이 높은 학교에 허용, 국내대학 정원 범위내에서 정원 설정 등

※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의 후속조치로 별도의 법인격 없이 설립 자금만 공동부담하는 형식의 합작설립 법안 입법예고 (5.23~7.2일)

④ 글로벌 교육프로그램 유치·집적

< 현행 유치제도의 한계 >

- ▶ 그간 외국교육기관 유치는 분교단위로 진행된 반면,
 - 중국 심천 등은 해외 유명대학이 프로그램 단위로 진출하여 국내·해외학생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집적지구 프로그램(Virtual University Park) 운영중

- 기존 대학단위 유치에서 벗어나 프로그램 단위로 유치하고 연계·집적시키는 방안 마련 (교육부, 15년 상반기)

< 글로벌 교육프로그램 유치·집적방안(예) >

- ▶ 국내·외 최고 수준 대학의 프로그램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제도개선* 및 인센티브 강구
 - * 교류참여 국내대학에 외국대학 학점·학위부여 허용 등
- ▶ 기존제도(교육과정 공동운영, 상호학점 인정)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참여대학(외국대학+국내대학)간 MOU 체결 추진
- ▶ 우선 외국대학 유치가 활발한 송도 글로벌 캠퍼스 여유공간을 활용

- (기대효과) 학교운영·학생편의에서의 차별을 해소하고, 제도 개선을 통해 우수 외국교육기관의 국내진출 촉진

[유치시 효과] 3개 글로벌 수준의 특성화 대학 유치시 약 2,200여명의 국내외 학생에게 학업기회가 부여될 것으로 전망

- 직접설립, 합작법인, 현지법인 등 국내분교 설립, 프로그램 진출 등 다양한 Option을 제공하여 국내진출을 촉진

[해외 사례] 주요국은 현지 단독법인, 합작법인 등 다양한 형태의 외국학교 설립 허용

- * 싱가포르: (INSEAD) 비영리 국내법인, (TUM, 獨 공대) 영리 국내법인
- * 중국: (상해 뉴욕대) 비영리 국내법인, (닝보-노팅엄대학) 비영리 국내법인

[2] 어학캠프 활성화

- (현황)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미국, 호주, 필리핀 등 해외에서 어학연수를 받으려는 수요가 상존

- 해외 어학연수 수요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해 학교시설을 활용한 방학중 어학캠프를 허용 (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, '13.12월)

< 4차 투자활성화 대책 중 어학캠프 관련 내용 >

- (현황) 학교의 우수한 인적자원과 물적시설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방학중 어학캠프 운영이 제한
 - * 국내학생들이 재학중인 학교이외의 기관에서 교습을 받으려는 경우, 학원 법상 학원에서만 가능하고 여타 학교에서는 불가 (학원법 유권해석)
- (개선방안) 국가·지자체·교육청이 학교에 교습을 위임한 경우 가능한 것으로 간주, 국가·지자체·교육청과 학교간 MOU 체결을 통한 어학캠프 운용방안을 발표

- 대책발표 이후 대학, 특목고, 국제학교 등 다수 학교가 어학 캠프 운영에 관심을 표시하였으나, MOU체결에서 애로 발생

[애로 사례] ① N학교는 교육청이 소관지역 학생에 대한 MOU만을 체결 하겠다는 입장을 보여, 교육청 대신 지자체와 MOU 체결

② H학교는 소관지역 교육청이 MOU 체결에 소극적이어서 타지역 지자체와 MOU 체결

○ 교육당국을 중심으로 어학캠프 운영 희망 학교를 전수조사하고 지자체 · 교육청 등에 대한 MOU 체결 독려

* 운영기준 마련(5.7일),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시(5.22일), 행정부시장 · 행정부지사 회의시(6.27)시 홍보

- 45개 학교에서 어학캠프 운용을 위한 MOU 체결

* MOU 체결현황(7.30일 현재): 총 45개 학교, 11,000여명 참여 [제주 국제학교, 하나고·한국외대부설고, 연세대·한국외대 · 부산외대 · 뉴욕주립대 등]

□ (개선방안) 금년 여름방학부터 시행되는 어학캠프가 차질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

○ 어학캠프 전담담당관을 지정(교육부)하여 어학캠프 운영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해소 · 지원

○ 금년도 운영성과를 보아가며 학교의 어학캠프 참여 확대를 위한 별도의 대책 마련 (교육부, 14.11월)

- 지자체 · 교육청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, 캠프운영의 자율성 제고 등

□ (기대효과) 해외 단기 어학연수의 국내 대체로 유학비 지출이 축소되고 해외연수에 따른 안전 · 생활지도 문제 등 해소

[3] 대학 기술지주회사 활성화

□ (현황) '08년부터 대학 보유기술을 기업에 이전·사업화하기 위해 대학기술지주회사* 제도를 도입·운영중이나, 투자실적이 미흡**

* 대학의 보유기술 사업화를 목적으로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출자하여 설립하는 회사

** '14.7월 현재 33개 기술지주회사에서 168개 자회사를 운영중이나 총 매출액은 '13년말 기준 821억원에 불과

○ 대학이 출자한 기술의 낮은 사업성, 지분비율 규제 등이 민간 기업의 투자확대에 주된 애로요인으로 작용

○ 「공과대학 혁신방안(4.10일)*」를 계기로 대학과 산업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중

* 기술이전 성과 등 산업계와의 협력에 대한 평가 강화, 기술사업화에 재정지원

- 기술지주회사는 기술 사업화의 핵심 매개체로서, 기업투자 확대를 위해 수익성이 강화된 비즈니스 모델로 개선 필요

< 해외 대학기술지주회사 운영 사례 >

▶ (시카고 대학) 시카고 대학과 아르곤 국립연구소가 보유한 특허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하여 ADC*라는 기술지주회사 설립, 150개 회사를 설립·투자하여 43개 IPO·M&A에 성공

* 창업보육, 신규 시장조사, 비즈니스 모델 기획, 공동창업, 지분투자 등 수행

▶ (칭화대) 칭화기술지주회사는 6개 상장사를 포함해 34개사를 관리하고 있으며, 자회사 연매출액 합계가 약 5.2조원 수준

- 기술이전센터를 통해 연간 약 500억원 상당의 기술이전 계약 체결

□ (개선방안) 기업이 기술지주회사에 투자할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투자과정에서의 애로를 해소

○ 기술지주회사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이 출자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R&D 체계를 개선

- 기술을 개발한 교수가 기술지주회사 자회사의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우수기술의 출자 유도
(산학협력촉진법 시행령 개정, '15.3월)
 - * 현재는 본인이 개발한 기술을 기반으로 설립한 자회사에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회사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적정한 이익 보상 곤란
- 기업의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대학 R&D 과제를 확대하고, 우수성과 정보를 산학협력 중개센터*를 통해 기업에 제공
 - * 대학과 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산학협력 정보를 공유(www.UICC.re.kr)
- 민간기업이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기술지주회사 의무 출자비율(20%) 완화
(산학협력촉진법 시행령 개정 '15.3월, 기술이전촉진법 시행령 개정 '14.12월)
 - 유상증자 등으로 인해 20% 보유비율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5년간 자회사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 부여
 - * 「연구개발특구법」상 연구소 기업은 유예기간 5년 부여 ('14.11월부터)
- 산학연 협력 관련 재정 지원 사업*을 민간협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편
 - * 미래부 산학연 협력 활성화 사업('14년 161억), 교육부 LINC 사업('14년 50억)
- 사업성 있는 특허 발굴, 원천기술에 가까운 대학기술의 제품화 연구, 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지원 확대
- 평가지표에 기술사업화 실적을 반영하고, 민간기업과 합작투자(JV) 형식*으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우선 지원
 - * 대학·출연연·기업 공동출자회사의 매출액이 교수·연구원 직접창업 대비 10배
-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대학기술지주회사와 연계하여 산학연 협력을 위한 플랫폼으로 육성
- (기대효과) 기업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의 사업화가 활성화되고, 민간기업의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투자 확대 기대

(1) 국내기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

□ (현황) 주변국의 고등교육 수요 증대, 한류 확산에 따른 국내유학 여건조성에도 불구하고 유학생 유치의 제약요인 존재

* 외국인 유학생 규모(학위+연수, 만명): ('07년)4.9 →('09년)7.6 → ('13년)8.6

○ 국내대학 입학시 해외유학생에 대한 엄격한 사증 발급, 한국어 요건 등은 국내유학생 유치의 애로요인으로 작용

* 유학생 신분의 불체자 증가 등으로 유학생 유치·관리 인증제 시행('11년~)

○ 높은 교육수준과 국제적 명성을 갖춘 민간 교육기관이라도 정규 교육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외국인 유학생 입학이 원칙적으로 불허

- 대학부설 교육기관의 경우 어학연수과정은 외국인 유치를 허용하나, 기능 연수 등을 위한 경우에는 유학생 유치 억제

□ (개선방안) 외국인 유학생의 입학·입국요건 완화 등 국내 유학 친화적 여건을 조성

○ 유학생 유치·관리 우수대학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고 한국어가 유학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맞춤형 기준 마련

- 이공계의 경우 한국어 능력기준을 완화(3→2급)하되 입학후 대학에서 한국어 연수기회 제공(외국인 유학생 처리요령 개정, 14.7월)

*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입학등급: 1등급(최저) ~ 6등급(최고)

※ 불체자관리가 우수한 대학에 대한 유학생 입국 사증발급시 심사 절차 간소화 旣 실시(유학생 사증 발급 지침 개정, 14.4월)

- 우수 민간 교육·훈련기관에서의 외국인 유학생 교육기회를 확대하되, 유학생 관리 등 보완방안 병행
 - i) 교육수준이 높고 ii) 외국인 학생 수요가 많으며 iii) 유학생 관리 능력을 갖춘 우수 민간 교육·훈련기관(대학부설 교육기관* 포함)에 대해서는 해외 유학생 유치 허용(일반연수(D-4) 비자 발급)
 - * (현재)대학부설 어학원 → (15년)시범사업 (예: 어학·요리분야 등)
 - 최소 연수시간 설정, 연수후 귀국방안 마련 등으로 불법취업 유인을 억제하고 불법체류·취업 단속인력 확충 등 관리시스템 개선

□ (기대효과) 중국 등 주변국의 고등교육·직업 연수수요를 국내에서 흡수

[해외 사례] 일본에 진출한 프랑스의 L 요리전문 교육기관은 대만 등 아시아권 유학생을 적극 유치하여 전체 1,000여명의 학생중 약 40%가 해외유학생으로 구성

[2] 사내대학 활성화

□ (현황)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학력이 인정되는 사내대학이 운영*중이나 활성화되지는 못하는 상황

* 삼성전자 공과대, LH 토지주택대, 산업은행 금융대, 삼성중공업 공과대, 현대중공업 공과대, SPC 식품과학대, 대우조선해양대, 포스코기술대 등 8개

- 종업원 2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단독설립이 가능
- 해당 사업체에 고용된 종업원과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종업원, 하도급·협력관계 종업원을 대상으로 운영

□ (개선방안) 사내대학의 설립·운영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사내대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
(평생교육법 개정안 국회제출, '15.1/4분기)

- (설립) 단독설립 → 기업 공동설립을 허용하여 교육생 모집, 학사운영 등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

- (교육생) 학생정원의 일정비율내에서 동일직종의 타회사에 재직하는 근로자 입학도 허용
- (교원요건) 명장, 현장 실무경력 일정기간 이상인 사람도 자격 부여
- (기대효과) 내실있는 근로자 훈련으로 일학습 병행의 기반을 조성하고 사내대학 운영의 안정화에도 기여

[사례] A 사내대학의 경우 동종업종 B·C·D 사 근로자 참여로 고졸취업자 등의 일학습병행체제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학사운영 및 교육의 다양성 확보

(3) 폴리텍을 통한 서비스인력 양성

- (현황) 산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폴리텍 대학이 운영중이나 제조업 중심으로 서비스업 인력 양성 부족
 - 현재 34개 폴리텍은 제조업분야 기술 및 자격증 습득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서비스특화 폴리텍은 부재
- (개선방안) 폴리텍을 통한 유망 서비스분야 인력 양성 확대
 - 기존 폴리텍에 서비스과정을 추가하고 도시형 서비스특화 폴리텍 설립 추진
 - 수도권 등 서비스인력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 설립 추진
 - 폴리텍에서의 서비스인력 양성은 전문대학이나 민간훈련기관 등을 통한 인력공급이 어려운 직종 중심으로 추진
 - * 대규모 시설·장비투자 필요분야(금융정보, 고가의료장비 필요분야) 및 ICT·IT융합분야 등

- (기대효과) 서비스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서비스산업 고도화 및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

[인력 양성사례] 서비스 폴리텍 1개교 개교시 연간 600여명이 서비스분야 특성화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(4) 해외유학 복귀자에 대한 수용 여건 개선

- (현황) 해외학교 졸업 등 유학 경험이 있는 고학력 인재들의 국내 복귀가 증가
 - 금융위기이후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의 일자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
 - * 대학 졸업후 미국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경우 비자(F1) 만료에 따라 귀국 불가피
 - 국내 귀국후 대학편입, 취업, 법학·의학전문 대학원 진학 등을 선택하는 것으로 추정
 - 특히 석박사, 박사후과정 등 상당수 이공계 우수인력도 복귀를 희망
 - 초중등 학생의 해외유학은 조기유학 필요성에 대한 인식변화, 안전, 비용부담 등으로 최근 지속 감소

< 국외 한국인 유학생 (만명) >

	'03	'05	'08	'10	'11	'12
초등	0.4	0.8	1.3	0.9	0.8	0.6
중·고등	0.6	1.2	1.5	1.0	0.9	0.8
대학(학위+연수)	16.0	19.2	21.7	25.2	26.2	23.9
합계	17.0	21.3	24.4	27.1	27.9	25.4

□ (개선방안) 해외유학 복귀인력이 국내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(교육부, 14년 하반기)

- 외국학교에서 국내로 복귀시 국내학교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 다각적으로 마련

- * (예) 공동학위제, 교환학생프로그램 확대 등

- 전문연구요원 기업배정 확대, 국내 취업 기회 확대 등으로 이공계 인력의 국내유턴 촉진

- 연구소·기업체에서 인턴을 실시하고 한국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

- 경제·금융 등 해외전문인력 국내유입 촉진을 위한 Job Fair 공동 개최 추진

- * (예) 금융기관·금감원 뉴욕 Job Fair 공동개최('14.9월)

- 디자인, 패션, 요리 등 고급 서비스인력 국내유입 방안 마련

- 정부해외인턴십 프로그램에 해외 유학생 포함

- * (예) 글로벌무역 인턴십(현재 국내소재 대학생만 가능), 글로벌 지역 전문가 인턴십(국내 24개 사업단 참여 대학의 재학생만 가능) 등

- 초·중·고 해외유학생 수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제주도·경제자유구역내 국제학교 신설 및 초중고 유학생 복귀반 확대

□ (기대효과) 학업, 취업 등 외국유학생 수용여건을 개선

[실태조사] 해외 이공계 유학생의 61.3%가 5년 이내 국내복귀, 73.1%가 장기적으로는 국내에 복귀하여 평생직장을 가질 계획 (12년)

(1) 기술평가를 토대로 하반기 금융지원 확대

- (현황) 창업기업 육성 노력에도 여전히 혁신형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 지원기능이 미흡
 - 매출액·신용등급이 다소 미흡하나 기술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체계적인 기술평가에 기반한 자금공급이 곤란
- (개선방안) 하반기부터 기술평가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고, 우수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확대, 창업지원 대상 확대 추진
 - ① 기술신용평가기관(TCB)* 도입('14.6~7월) 및 기술정보 DB(TDB) 구축('14.7.21일)으로 기술평가에 기반한 대출 시행
 - * TCB로 3개社(기보, 한국기업데이터, 나이스평가정보)를 지정하여·운영 중
 - 신규 정책금융공사 온렌딩 대출, 기보 보증 등에 적용하여 '14년 하반기중 약 7,500개 기업에 기술신용정보를 활용한 대출 시행
 - 금융기관이 여신심사시 기술신용정보를 적극 활용하도록 면책, 경영실태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
 - ② 우수창업·기술기업 연대보증 면제 확대 및 민간은행 참여
 - 우수창업자는 신기보 보증(85%) 뿐만 아니라 비보증부분(은행책임, 15%)에 대해서도 연대보증 면제(숏은행-신·기보 업무협약 체결('14.10월))
 - 신·기보 우수창업자 1천여개 기업이 대상
 - 기술수준이나 신용이 우수(평가등급 상위 20~30%)한 중소기업의 경우 창업초기에만 국한하지 않고 신·기보 연대보증 면제('14.11월)
 - 신·기보 非창업기업 보증 각 500억원 이상
 - 산은·기은이 기술우수기업 신용대출시 연대보증 면제('14.7월부터 시행)
 - 산은·기은 신용대출 각 500억원 이상

③ 은행·정책금융기관의 창업자금 지원 대상 확대

- 만 20세 → 만 17세 이상 / 창업후 3년 → 5년 이내 ('14.10월)
- 아이디어와 사업계획만 있는 예비창업자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예비창업자 기술평가모형을 개발(기보, '14.7월)

□ (기대효과)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·벤처기업에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한 원활한 자금 공급 활성화 기대

[2] 중소·중견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금융지원 강화

□ (현황) 현 중소기업 정책금융 자금은 풍부*하나, 기업이 성장과정에 직면하는 Death Valley 극복에는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평가

* 중기청 정책금융 공급규모(조원) : ('12) 81.8 → ('13) 93.2 → ('14계획) 93.8

< 창업 후 성장단계별 Death Valley >

- 2~3년 : 창업 자금은 소진되는 가운데 R&D 등 기술개발 자금수요 확대
- 5~6년 : 초기 투자자금 회수가 발생하고 사업화를 위한 자금 수요도 발생
- 8~9년 : 성장·사업 확장을 위한 설비투자 등 대규모 자금 수요 발생

- 정책금융기관 특성상 창업 초기기업에 집중 지원하고, 재원의 한계 등으로 충분한 자금 지원이 어려운 측면
- 리스크를 공유하는 투자형 지원 규모가 적고 투자 자금이 성장기업에 집중 지원되는 등 리스크 회피적 성향
- 단순 자금 지원 중심으로 창업 멘토링, 컨설팅, 판로지원 등 실질적 창업·성장지원 기능은 미흡

□ (개선방안) 멘토링·판로확대 지원 등을 통한 실질적인 창업지원과 他 정책자금·펀드 사각지대(고리스크 분야 등) 지원 강화

① 선도적 모험자본 역할을 하는 성장사다리펀드*를 속도감 있게** 집행하고 모태펀드의 벤처투자를 증대***

* 정책금융기관의 공동 출자로 3년간 6조원 조성 목표 ('13.8~14.7월 2.4조원 조성)

** 집행목표(조원) : ('14.12) 0.3→0.5, ('15.6) 0.5→1.0 ('15.12)0.9→1.5 ('16.6)1.3→2.0

*** 신규 벤처투자를 전년대비 10% 증대 : ('13(1.38조원) → '14(1.52조원)

- (창업지원) 성장사다리펀드가 투자한 기업에 대해 창업보육기관*(Accelerator)과 연계**를 통해 멘토링, 네트워킹 등 지원

* 멘토링, 네트워킹, 교육, 창업준비금(Pre-Seed) 지원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프로그램

** 운용사(GP) 선정시 창업보육기관과 연계 투자시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

- (성장단계별 투자) 지적재산권 투자, 성장목적의 M&A, 법정관리 기업 재기 등 그간 지원이 미진했던 영역에 대한 지원 강화

- (투자집행 가속화) 다양한 투자집행 촉진 방안*을 통해 사다리펀드의 투자 집행을 활성화하여 적극적 모험자본 제공 기능 강화

* 수요가 있고 민간자금이 결성된 영역에서 펀드매칭 활성화를 통해 조성기간 단축, 일정수준 이상(예: 75%) 조성된 펀드에 매칭을 통해 투자집행과 자금모집 병행(멀티클로징), 투자 집행 인센티브 확대 등

② 우수창업기업에 투자와 용자를 복합적으로 지원하여,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민간의 후속투자를 유인

* 보증연계투자 : 신·기보가 보증기업의 주식·CB·BW 등을 인수('14년중 700억원)
투자옵션부보증 : 기보 보증부 대출을 2~3년 후 주식으로 전환('14년중 100억원)

- 엔젤·VC 등 민간이 선투자·보육시 정책자금·R&D·마케팅을 연계 지원하고 성공한 벤처1세대의 재투자 등을 통한 청년창업펀드* 확대

* ('13) 카카오 등 1,050억원 → ('14) 다음 등 1,000억원 추가 조성

③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탈 등과 공동펀드를 조성하고 보유 네트워크 등을 활용, 나스닥 상장 등 추진

* 한국형 요즈마펀드(2,000억원) : 글로벌 유명 VC 등과 펀드 조성 협의 중
외자유치 펀드 : ('13) 실리콘밸리 2개 VC와 2.2억불 조성 → ('14) 1억불 추가

④ Death Valley 기업의 성장애로 완화를 위해 '기술개발제품 판로확대 방안' 마련('14.9월)

* (예) 창조제품 유통 통합플랫폼 구축, 수출연계형 기술사업화 지원, 네트워크 개선, 대형 국책사업계획 수립 시 신기술개발제품 구매 의무화 등

- (기대효과) Death Valley를 극복할 수 있도록 창업-성장-회수 단계별 중소·중견기업 지원 종합 플랫폼 구축

(3) 유망기업의 상장활성화 기반 마련

□ (현황) 상장기업에 대한 규제, 경기·증시여건, 복잡한 상장요건과 절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기업의 신규상장이 둔화

* 신규상장 기업 수(코스피, 코스닥) : ('09)66 ('10)96 ('11)73 ('12)28 ('13)40

○ 상장법인에 대한 각종 규제부담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나, 비상장법인과 차별화되는 상장의 혜택이 부족

○ 주가 횡보세가 지속되면서 상장시 기업가치 저평가 우려 존재

○ 투자자보호를 위해 상장심사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상장부담 증가

□ (개선방안) 상장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별로 상장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적 지원방안 강구

※ 증시 진입요건 완화를 중심으로 상장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既 시행중
→ 이를 보완하여 추가적으로 상장기업 편익 제고 방안 마련

① 상장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, 비상장기업에 비해 불합리하게 역차별 받는 부분을 시정('14.10월 관련법률 입법예고)

- 상장기업의 설비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상장한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

*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공제율(현행 3%)을 1%p 상향조정

- 상장기업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(BW) 공모발행을 허용하여 상장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*하고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

* 대주주의 편법적인 경영권강화 문제 등으로 상장기업의 분리형BW 발행이 전면 금지('13년) → 대주주에 의한 악용가능성이 희박한 공모발행은 재허용

- 상장기업 주식배당 절차 간소화(주주총회→이사회), 자본시장법상 공시와 중복되는 상법상 공고의무 면제 등 상법상 특례 확대

- 상장법인에만 적용되고 있는 자기주식의 기한내 처분의무를 완화하여 재무관리의 유연성 제고

* 상장법인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을 3년내에 전부 처분해야 함 → 배당가능이익 초과분만 5년내에 처분하도록 완화

② 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기업가치가 제대로 평가되는 시장 여건 조성

- 증시 가격제한폭(±15%)을 단계적으로 확대(예시: ±30%)하여 시장의 가격 발견기능 강화

※ 다만, 선진국형 변동성 완화장치*를 도입하여 과도한 가격 변동을 제어

* 예상체결가격이 급격히 변하거나 일정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일정기간 거래체결을 정지시켜 가격안정 유도

- 코스피 상장기업의 **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공모주 20% 우선배정** 규제를 완화하여 20%범위내에서 조합이 원하는 만큼만 배정 ('14.10월 관련법률 입법예고)

* 우리사주조합 배정분 실권 발생에 따른 IPO 흥행실패,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청약 중용 등 의무배정제도의 부작용 해소

- 불성실한 수요예측 참여기관(기관투자자 등)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IPO시 공모가 산정의 적정성 제고('14.10월)

③ 자본시장과 상장기업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시, 상장심사 등에 대한 낡은 규제를 합리화

-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분반기보고서, 합병 등에 관한 주요 사항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기업들의 공시부담 경감

* 분반기보고서 : 분반기 종료후 45일 → 60일

합병 등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 : 사유발생 후 익일 → 3~5일

- 우량 코스닥기업에 대한 **코스피 이전상장** 제도를 신설하고, IPO 관련 각종 규제(서류제출, 주간사 의무계약 기간 등)를 합리화('14.10월)

□ (기대효과) 기업들의 상장유인을 제고하여 연 60~70개 수준의 신규상장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

- 초기 투자자들은 상장을 통해 이익을 얻고 이를 혁신기업에 재투자하는 투자의 선순환 체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[4] 유망서비스산업 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

□ (현황) 그동안 각 산업분야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펀드 결성에 참여중이나 개별수요 발생시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측면

* 의료·제약 등 업종에 대한 정금공 투자 총액은 4,135억원('10~'14.3월)

□ (개선방안) 유망서비스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전략 추진

○ 향후 3년간 3조원 규모의 유망서비스산업 지원펀드 조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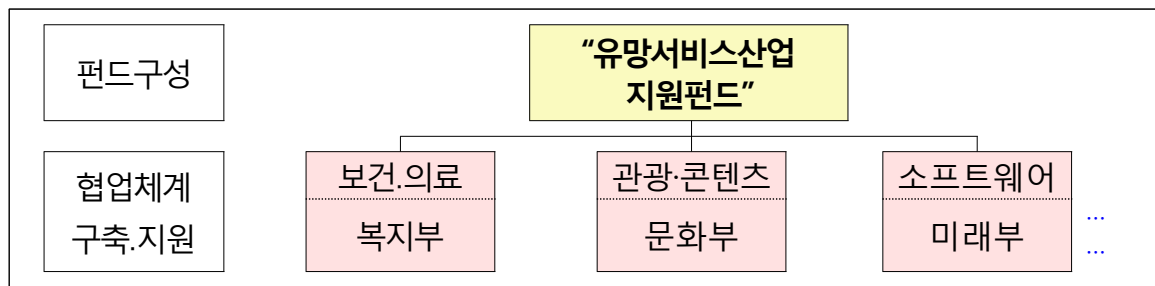
-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펀드와 연계하여 산은·기은·수은 주도로 1조원 규모 우선 조성

○ 각 산업분야별 수요에 대응하여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

- 보건·의료(복지부), 관광·콘텐츠(문화부), 소프트웨어(미래부) 등 각 분야 담당부처가 수요파악 및 지원전략을 수립하되,

- 금융위, 정책금융기관(정금공·산은), 주무부처가 함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효과적인 지원방안 협의

※ 주요 사업에 마중물(Seeding) 및 공동투자(Matching) 역할 수행



[참고] 제약·의료산업 육성 펀드 조성(복지부)

- 제약·의료기업 영세성 극복, 병원 해외진출 활성화 등을 위해 1,000억원~1,500억원 규모의 펀드결성 추진중('글로벌 제약펀드 2호')
- 복지부 정책자금(100~150억원)을 후순위로 하고, 정금공 500억원, 모태펀드 100억원 등 참여 협의중

□ (기대효과) 유망산업의 경쟁력 있는 기업들에 대한 투·융자 확대로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고 경제활력과 고용을 증대

(1)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

- **(현황)** 가입률이 낮고, 장기보유·연금화 등도 미흡하여 퇴직 연금을 활용한 실질적 노후소득 보장은 취약한 상황
 - * 사업장 규모별 도입률('13): (전체) 16.0% (대기업) 91.3% (중소기업) 15.9%
 - 퇴직연금 수급 형태('13): (일시금) 91.6% (연금) 8.4%
- 원리금보장형(92.6%)·단기상품(81.9%) 위주의 자산 운용으로, 안정적인 근로자의 연금자산 증식에 한계
- **(개선방안)** 가입 확대, 수익률 개선, 연금화 유도를 위해 퇴직 연금 제도 개선('14.9월 종합대책 발표)
 - ① **(기금형 도입)** 근로자의 참여 확대 및 체계적 퇴직연금 자산 운용 등을 유도하기 위해 기금형 제도 도입 검토
 - 중소기업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·운영
 - 現 계약형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운용위원회 설치, 투자원칙 보고서 도입 등 의무화 추진
 - ② **(자산운용규제 완화)** 퇴직연금 자산의 효율적 운용을 가로막는 세분화되고 경직적인 자산운용규제를 완화
 - 총 위험자산 보유한도만 유지하고, 개별자산에 대한 보유 한도는 폐지 또는 완화
 - ③ **(세제 인센티브)** 퇴직연금 가입 확대와 연금화 유도를 위해 과세체계 개편
 -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300만원 확대하고,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부담을 일시금 수령시에 비해 30% 경감
 - 세제혜택이 과도했던 고액 퇴직자에 대한 퇴직소득세 부담 조정
- **(기대효과)** 퇴직연금 체계로 더 많은 근로자들을 편입하고 연금화를 유도하여 실질적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
 - 적극적 자산운용으로 연금자산의 수익률이 개선되고 부수적으로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

[2] 금융지주회사의 전략기능 활성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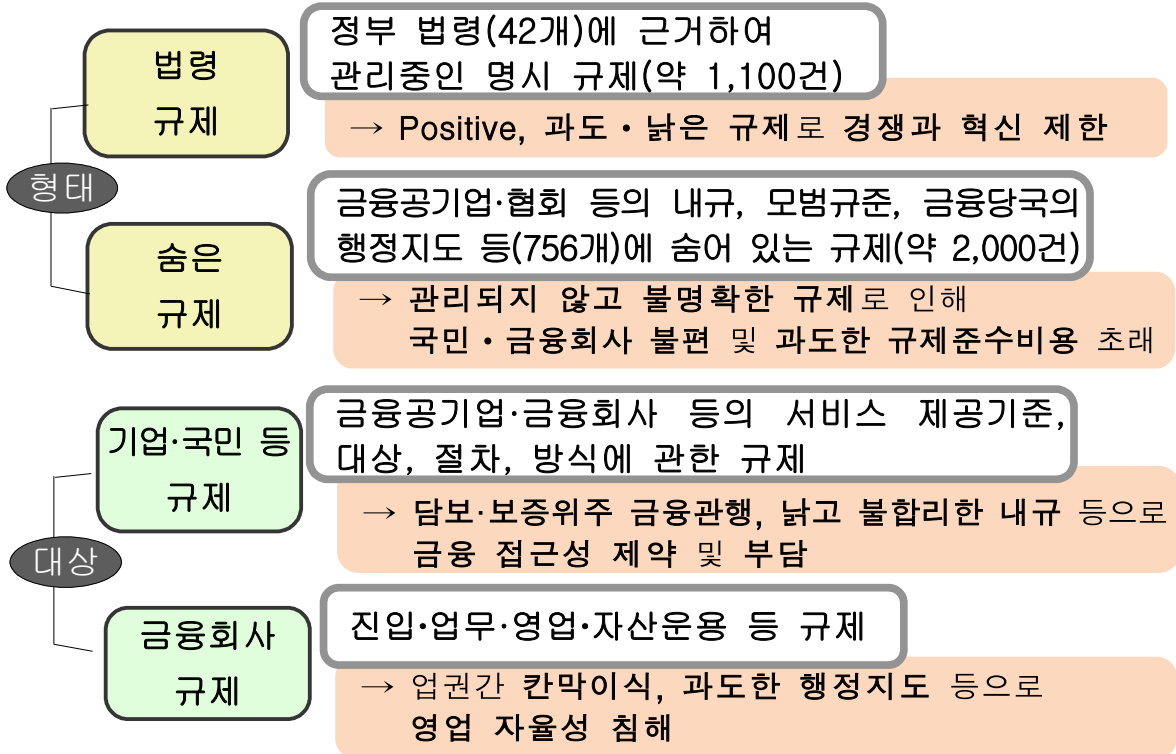
- (현황) 금융의 대형화·겸업화 등을 위한 금융지주제도 도입('01년) 이후 국내 금융산업에서 금융지주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
 - * 금융회사 총자산(3,361조원) 중 금융지주 비중이 58%(1,946조원)('13년말 기준)
- 반면, 자회사간 시너지가 미흡하고 금융환경 변화에 전략적 대응이 원활하지 않다는 부정적 평가가 대두
- (개선방안) 금융그룹이 지주체제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영업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경영지배구조를 합리화('14.12월)
 - (융합금융서비스 활성화) 지주 계열사간 겸업효과를 극대화
 - 지주·자회사간 및 자회사 상호간 임직원 겸직이 가능한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감독당국 승인절차도 간소화
 - 자회사간 위탁이 가능한 업무범위를 신용평가·감리 등으로 확대하여 그룹 전체의 업무 효율성을 증대
 - 복합점포(예: 은행·증권 공동영업)의 물리적 장소 분리 및 고객 정보 이용기준 등을 합리화하여 금융서비스의 품질을 제고
 - (해외진출 촉진) 해외 현지법인에 대해서는 지분보유의무(50%)를 탄력 적용하고 자금지원 및 업무위탁 기준도 완화
 - (지배구조 합리화) 지주사의 기본임무인 「자회사 경영관리」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의사결정구조를 확립
 - 지주사에 「경영관리협의회」와 「위험관리협의회」를 설치하여 그룹차원의 주요 경영의사결정을 공식화
 - 완전자회사의 경우에는 주주권의 보호를 위한 사외이사·감사위원회 설치 부담을 대폭 완화
- (기대효과) 금융지주의 복합금융서비스가 활성화되고 해외 영업을 확대되는 등 시너지 창출 확대
 - 금융그룹 차원의 전략적 의사결정이 강화되고, 지주회사의 자회사 경영관리가 공식·투명화

참 고

「금융규제 개혁방안」(7.10일 발표) 주요내용

※ 기 발표한 규제개혁방안의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, 규정, 금융공기업 내규 개정 등 신속하게 이행

□ (현황) 역대정부 노력에도 규제가 여전히 과도하고 체감도도 낮음



□ (개선방안) 획일적 규제 철폐가 아니라 **좋은 규제*** (Better Regulation) 시스템을 구축하고, 규제개혁 상시화 및 부작용 차단도 병행

- * ① 건전성, 소비자보호, 개인정보 등 → 유지·강화(Rule-Based 규제)
- ② 진입, 업무, 영업, 자산운용 등 → 개선·Negative(Principle-Based 규제)
- ③ 업권간 소위 '땅따먹기'식 조정보다 신시장 개척 등 **외연을 확대**하고, 금융공기업 등의 숨은규제 개선 및 검사·제재 등 관행 혁신

○ (금융규제 Negative 전환) 자본시장 중심으로 진입을 원활화 하고, 업무범위·판매채널·신금융상품 확대(10월 관련법령 입법예고)

- (진입 원활화) 금융투자업 인가 단위를 대폭 축소하고, 새로운 업무 추가(Add-on)가 편리하도록 개선

- (부수업무 신고절차 간소화) 은행·보험은 하나의 회사가 부수 업무 사전신고 완료시 다른 회사는 별도 사전신고 없이 영위
- (새로운 채널·상품) 계열사간 공동점포 운영, One-Stop 자산 관리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
- (영업 자율성 제고) 자산운용·영업활동* 관련 낡은 규제를 개선 하고 건전성 규제는 시장친화적으로 합리화**(10월 관련법령 입법예고)
 - * (예)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 확대(자기자본의 60%→100%)
 - ** (예) 자산운용사는 현행 NCR규제 대신 자기자본을 적기시정조치 기준으로 활용
- (해외 신시장 개척 지원) 해외지점 유니버설뱅킹* 허용, 해외 자회사 신용공여시 담보제공 의무 면제** 등 규제 완화(12월)
 - * 국내법이 허용하지 않더라도 해외법에 따라 가능한 업무 영위
 - ** 해외진출 최초 2년간 신용공여시 담보제공(신용액의 100~130%) 의무 면제
- 정상회담을 기회로 현지 인허가 의제화, 해외 금융당국과의 MOU, 고위급 면담 등 금융협력을 통한 현지 진출 지원
- (숨은규제 및 검사·제재 관행 개선) 행정지도를 전수조사하고 상시 관리*하며, 감독·검사 관행 개선**
 - * 행정지도 신설시 금융위 보고, 의견수렴 등 절차 강화(11월) 및 정책금융 기관의 문서요구 관행 개선(12월)을 통한 국민불편 해소
 - ** 금감원·예보 단일 공동검사반을 편성해 검사하고, 위반행위별 과태료·과징금을 시행령 등에 명시하여 검사·제재 합리화(9월)
- (규제개혁 상시화 및 부작용 차단장치 구축) 상시시스템 구축 및 철저한 사후관리*, 부작용 차단**을 통해 규제개혁의 효과성 제고
 - * 금융유관기관(22개) 규제심의기구 상설화, 「금융규제 정비의 달」 지정(매년 9월) 및 금융이용자 규제개선 요구권 실질화(규제개혁 포털)
 - **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과징금 제도 확대 등 제재 강화
- (기대효과) 현장 중심으로 법령 뿐만 아니라 숨은 규제를 개혁 하여 경제와 금융의 새로운 기회와 성장동력 창출을 적극 뒷받침

5-1

성과 구체화 프로젝트

(1) 물류단지 공급 확대

1) 지역수요를 반영한 물류단지 공급 확대

□ (현황) 물류단지는 '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'(이하 '계획')을 통해 시·도별로 5개년간 물류단지 공급총량*을 결정('98년 시행)

* 시도별 총량은 교통연구원 연구용역을 통해, 국가교통DB에 근거한 물류시설 수요량 전망(5년간)에서 물류시설 공급량 전망(5년간)을 차감하여 산정

- 공급총량이 사전에 결정되어, 계획에 없는 추가 수요 발생 시 단지 건설이 불가능해 물류단지 적기 공급 및 민간 투자 저해
 - 제2차 계획('13~'17년)은 공급총량이 650만㎡ 였으나, 경기회복 등으로 이를 초과하는 수요가 발생하여 지자체의 개선 요구 지속

< 총량제로 인한 물류단지 확충 애로 사례 >

- ▶ W社は 전북 익산에 자동차부품 물류단지(49만㎡) 조성 계획
- ▶ M社は 경남 사천에 농산물유통 물류단지(26만㎡) 조성 계획
- ▶ H社は 경북 영천에 항공부품 물류단지(30만㎡) 조성 계획

□ (개선방안) 실수요만 검증되면 물류단지 건설이 가능토록 개선하여 경기·전북·경남·경북 등에 물류단지 추가 지정

* 「제2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('13~'17)」 변경 →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('14.6)
→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및 신규단지 지정 추진('14년 하반기)

- 일부 지자체가 총량제를 근거삼아 국토부에서 배정한 공급량을 사업자에게 배분해오던 '사업 내인가' 관행도 근절

< 종전 >

국토부	물류단지 시도별 총량 배정
시·도	사업 내인가, 실수요 검증



< 변경 >

실수요 검증 (국토부 + 시·도 공동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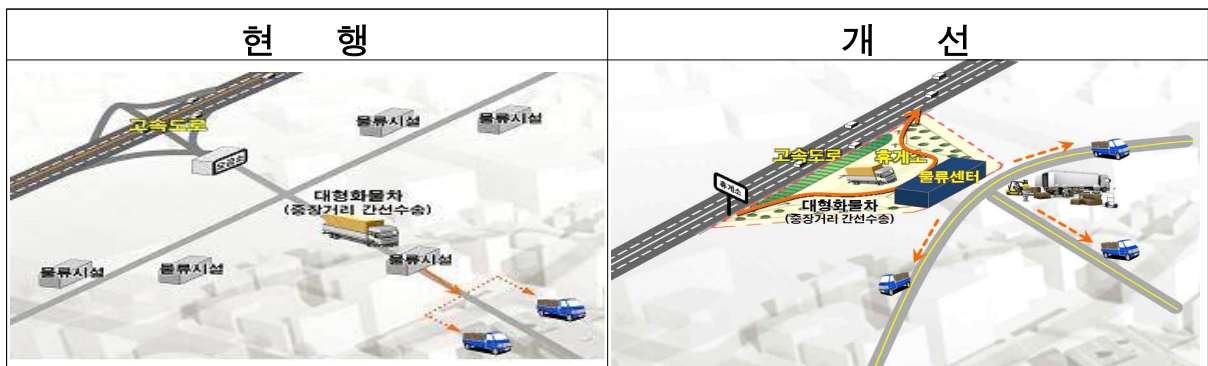
□ (기대효과) 경기·전북 등 단지 수요가 있는 지역에 1조원 수준의 투자 유발 및 시설 적기공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

* 예상소요 면적: 약 150만㎡(현재 운영중인 물류단지 727만㎡의 20%)

2) 고속도로 휴게소를 활용한 물류시설 구축

- (현황) 물류시설은 도심 접근성이 중요하나 높은 지가 등으로 도심 주요거점 내 택배화물 배송센터 확충이 어려움
 - 현재 고속도로 IC 인근에 배송센터가 집중되어 있어 IC 진출입에 따른 교통체증으로 효율성 저하
- (개선방안) 접근성이 뛰어난 휴게소 배후부지에 물류시설을 설치하고 배후도로와 연계하여 휴게소에서 화물을 집배송*
 - * 대형화물차량은 휴게소에 하역하고 소형차량은 휴게소 배후와 연결된 지역도로를 이용해 물류센터에서 분류된 물건을 인근 도심으로 배송
 - '15년에 옥천휴게소 시범운영* 후 성과를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확대** 추진('17년~, 4개소)
 - * 도로공사-사업자 MOU 체결('14.하), 물류시설 설치 및 운영개시('15.하)
 - ** 기흥, 송산포도, 동김해(신설), 화도JTC(신설)
 - 휴게소 물류센터의 원활한 물류수송을 위해 휴게소에 하이패스 전용 IC* 설치
 - * 휴게소 인근주민들의 고속도로 접근성도 제고
- (기대효과) 휴게소 물류센터 5개 설치로 약 400억원의 민간투자 효과 기대

< 물류센터 개념도 >



[2] 인천공항 물류허브 기능 강화

1)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 글로벌 배송센터 유치

□ (현황)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(FTZ)의 투자여건이 인근 국가들에 비해 불리하여 글로벌기업 투자유치에 애로

* 의료기기·반도체·LED 등 7개 기업에서 글로벌 배송센터 입주 의사

○ 현재, FTZ 내에서 사용·소비 목적*으로 반입 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만 수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

* 대만에서는 보관목적으로 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 영세율 적용

○ 해외의 글로벌기업이 아시아지역 수요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인천공항 FTZ내에 글로벌 배송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나,

- 글로벌 기업이 국내 물품을 구매하여 FTZ내 배송센터에 반입·보관시 세제상 불리하여 동 거래 형태를 통한 물류 통합관리가 곤란

* 사용·소비 목적 외에 'FTZ내 배송센터로의 반입'은 수출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세 영세율 미적용

** 인천공항 FTZ 내 반도체 분야 글로벌 기업인 A社の 글로벌배송센터가 과세 여건이 보다 유리한 타국으로 이전할 움직임

○ 또한, 인천공항의 항공물동량도 '10년이후 지속 감소* 중이며, '13년에는 처리 순위도 하락**하여 투자여건 개선이 필요한 상황

* ('10) 268만톤 → ('11) 254만톤 → ('12) 246만톤 → ('13) 246만톤

** '06~'12년 1위 홍콩, 2위 인천 → '13년 1위 홍콩, 2위 두바이, 3위 인천

□ (개선방안) 비거주자 또는 해외법인이 국내사업자로부터 구매하여 FTZ내 글로벌 배송센터로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 "부가세 영세율 적용"(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, '15.6월)

* ① 비거주자 등과 직접 계약 체결, ② 대금 결제는 외국환은행을 이용, ③ FTZ내 비거주자가 임대·사용하는 물류시설에 보관할 것 등

- FTZ 반출입에 대한 **화물관리 강화 방안** 마련(관세청, '15년 상반기)
- (기대효과) 글로벌기업 유치를 통해 신규 항공물동량 창출
 - 글로벌 배송센터 1개당 연간 물동량 최대 200톤, 매출 360억원 증가 예상

2) 인천공항 직행 화물 KTX 도입

- (현황)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화물수송은 도로에만 의존하고 있어 신선화물, 특송 등 신규수요에 대한 허브공항 경쟁력 부족
 - * '07~'10년간 택배화물 연평균 18.7% 증가, 신선화물 연평균 5.2% 증가
- 서울역에서 인천공항까지 KTX운행(여객)이 가능토록 개선*(14.6월 개통) 되었으나, KTX선로망에 적합한 **고속화물열차**는 개발되지 않은 상황
 - * 경의선(수색역)과 공항철도를 연결(2.2km)하여 경부선 KTX를 인천공항까지 운행
 - ※ 유럽 : 고속철도망을 공항과 연계하는 Euro CAREX(Cargo Rail Express) 도입('17~)
- (개선방안) 금년 6월에 인천공항까지 연결된 KTX 선로망을 이용할 수 있는 '**KTX 화물열차**' 도입 추진
 - '17년까지 화물 KTX 관련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* 등을 완료하고 시범운영, 인프라 구축** 등을 거쳐 '20년에 개통
 - * 소요비용 244억원(국비 190억, 민간 54억), 기간 '13.11~'17.11(4년간)
 - ** 기존 인천공항내 화물터미널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인입선 구축 등
- (기대효과) 고속열차를 활용한 화물운송을 통해 **운송시간을 크게 단축**(예: 구미산단-인천공항간 약 70분 단축* 예상)
 - * (현행) 화물차 활용(약 210분: 구미산단→고속도로→인천공항)
 - (개선) KTX 활용(약 140분: 구미산단→김천구미역→인천공항)

3) 인천공항 배후단지 용도지역 변경

- (현황) 인천공항 배후단지 2단계(약 55만m²)는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물류시설(예: 창고 등), 일부 제조업 등으로 입주가 제한
 - 해당부지의 활용도 제고 및 항공 물동량 창출을 위해서는 입주 제한을 완화할 필요
- (개선방안) 해당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(인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, '14.12월)
 - * (자연녹지) 물류시설, 식품공장·첨단업종 등 일부 제조업에 한해 입주 가능(공업지역) 물류시설, 업종 제한없이 모든 제조업 입주 및 대기업 공장의 이전 가능
- (기대효과) 약 2,500억원 이상의 직접투자 및 인천공항의 물류허브 기능 강화 기반 마련

(3) 항만의 효율적 활용기반 구축

1) 항만 배후단지 활성화

- (현황) 부산·인천·평택·당진항의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입주 수요는 높으나 현재 조성된 부지만으로는 포화상태
 - * 세계 주요 물류허브 항만들의 경우 대규모 복합배후단지 개발·운영을 통해 글로벌 물류·제조기업 등을 유치 중
- (개선방안) 기업의 배후단지 수요 증가에 부합하여 배후단지 조기 공급 및 공급 확대 추진(항만기본계획 변경, '15년 하반기)
 - '20년까지 개발 예정인 1,650만m² 규모*의 배후단지를 1~2년 앞당겨 조기 공급
 - * 부산항 배후단지(521만m²), 광양항(139만m²), 인천항(464만m²), 평택·당진항(229만m²) 등
 - 수요를 감안하여 입주 경쟁률이 높은 인천항, 부산항 등에 추가적으로 배후단지를 공급하는 계획도 수립

- (기대효과) 항만 배후단지에 대한 물류·제조기업의 입주 애로를 해소하고 항만물동량 추가 창출

2) 민자유치를 통한 항만 활용도 제고

- (현황) 기존의 부두 활용계획 및 시설, 부지 등이 새로운 여건을 반영하지 못해 민간투자를 저해
 - (울산항) 항만기본계획상 L社가 운영중인 부두는 기타광석으로 용도가 한정되어 있어 유류 등 새로운 화물운송수요에 대응 곤란
 - (광양항) P社의 생산제품(철강 등) 집중 출하시기에 철재 부두 시설이 부족하여 육상운송을 활용함에 따라 추가비용 발생
 - (해양플랜트) S社 등이 해양플랜트 산업에 투자할 의사가 있으나, 바다와 인접한 부지확보 및 지역특구계획 변경이 필요(고성군)
- (개선방안) 항만기본계획 변경 및 부두시설 확충, 새로운 부지 확보 지원 등으로 기업이 당면한 애로 해소
 - (울산항)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하여 L社가 운영중인 부두에서 유류화물 처리가 가능하도록 부두의 용도를 추가 지정('14.12월)
 - (광양항) P社 사업장 내 고철부두를 통해 초과물량을 우선 처리(항만운영세칙 개정, '14년 하반기)하고, 철재부두 배후부지를 확충*
 - * 유휴 매립지(국유)를 새로 조성할 철재부두의 배후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각 또는 임대 추진('15년)
 - (해양플랜트) 고성군 지역특구내 해양플랜트 시설 유치를 위해 지역특구계획 변경(조선산업특구 → 조선해양산업특구, '14.9월)
 - * 해양플랜트 부지확보를 위한 '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' 既 변경('14.7월)
- (기대효과) 민자를 활용한 부두시설 확충(약 1천억원, 울산·광양), 해양플랜트 산업 투자창출(약 2천억원, 고성) 기대

(1) 전문물류기업 육성 및 해외진출 확대**1)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업 육성**

□ (현황) 국내 3자물류 시장이 협소하여 물류전문기업의 자생적 성장이 어렵고, 대부분 운송·보관 위주의 단순 서비스 제공에 치중

* 3자물류 비율 : 우리나라 65%('13년), 미국·일본 등 주요 국가 80~90%

○ 3자 물류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* 효과가 미흡하고, 종합물류인증기업**('06년~)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부족

* 총 물류비 중 3자 물류비가 30% 이상시 전년대비 증가분의 3%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('14년 303억원)

** (현황) '14.6월 기준 21개 기업군 26개 업체가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

□ (개선방안) 화주기업이 물류 아웃소싱을 확대토록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종합물류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

○ 중소 화주기업에 대해 3자물류 세액공제를 확대(3%→5%)하고, 자가·2자물류 화주기업에 대한 3자물류 전환 컨설팅 지원 강화*

* 3자물류 전환시 개선효과(비용절감 등) 분석을 위한 컨설팅 비용 : (현행) 50% → (개선) 70%

○ 공공조달 입찰시 정부 인증 종합물류기업에 가점(0.5점) 부여 (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변경, '14.10월)

○ 물류기업의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교육과정 설치 등 SCM 역량 제고 방안 마련('14.12월)

* 「국내물류기업의 SCM 역량강화 지원방안」 연구용역('14.4~'14.12)을 바탕으로 물류 관련 대학 및 통합물류협회 등에 전문교육과정 설치 추진

□ (기대효과) 전문물류 시장 확대 및 화주기업의 물류비 절감*을 도모하고, 물류기업의 전문화 유도

* 컨설팅 사업을 통해 3자물류로 전환한 화주기업의 물류비 절감액: 평균 12%

2)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강화

- (현황) 중소기업 정책자금(‘14년 총 3.8조원) 우선지원 대상인 ‘전략산업*’에서 제외되어 자금조달에 애로
 - * 녹색·신성장동력산업, 뿌리산업, 부품소재산업, 지역전략연고사업 등 8개
- 물류분야 지원실적은 ‘12년 189억원에 불과하고 타 서비스 산업에 비해서도 불리
 - * 서비스 산업 중 녹색금융, 콘텐츠, SW는 전략산업에 既포함
- (개선방안)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선지원 대상이 되는 전략산업(녹색·신성장동력산업)에 물류산업 포함(중소기업 정책자금 용자계획 공고, ‘15.1월)
- (기대효과) 동일한 조건인 경우 물류기업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정책자금 지원 확대

3) 유라시아 물류 진출 확대

- (현황) 한정된 국내 물류시장, 대륙물류 관문으로서의 지정학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외진출을 통한 새로운 물류시장 개척이 필요한 상황
 -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(‘13.10월) 발표 이후 남북관계 등으로 인해 성과도출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추진이 미흡
 - 대륙과 연계한 복합운송체계인 트럭페리 사업도 지속적인 확대 기반 마련 필요
- (개선방안) 나진-하산 물류협력사업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선도 프로젝트로 추진하고, 트럭페리 사업도 단계적으로 확대
 - (나진-하산) 현지실사(2월, 7월) 및 사업성 분석(‘14년 하반기)을 토대로 참여여부 결정 후 유관기관 협의 등을 통해 지원
 - * 한-러 정상회담에서 양국 기업 간 나진-하산 물류사업 협력 MOU 체결(‘13.11월)

- (트럭페리) 정부간 협의를 통해 사업지역, 수송화물 범위 등을 지속 확대
 - (한-일) 운반대상 화물(자동차부품→반도체 등 포함) 및 운행구간 확대(부산-시모노세키→하카다,오사카) 추진('14년 하반기)
 - (한-중) 적용항구(천진항 추가개항) 및 운행구역 지속 확대*(산둥성→천진시·산시성), 2단계 사업(피견인 트레일러→트랙터 상호주행) 추진
 - * 현재 인천-위해, 인천-청도, 평택-일조 등 7개 항로, 617여대 운행중
- (기대효과) 나진-하산 사업은 1조\$의 유라시아시장 교두보 확보, 트럭페리 운행으로 항공운임 대비 20% 절감 효과

(2) 택배산업 선진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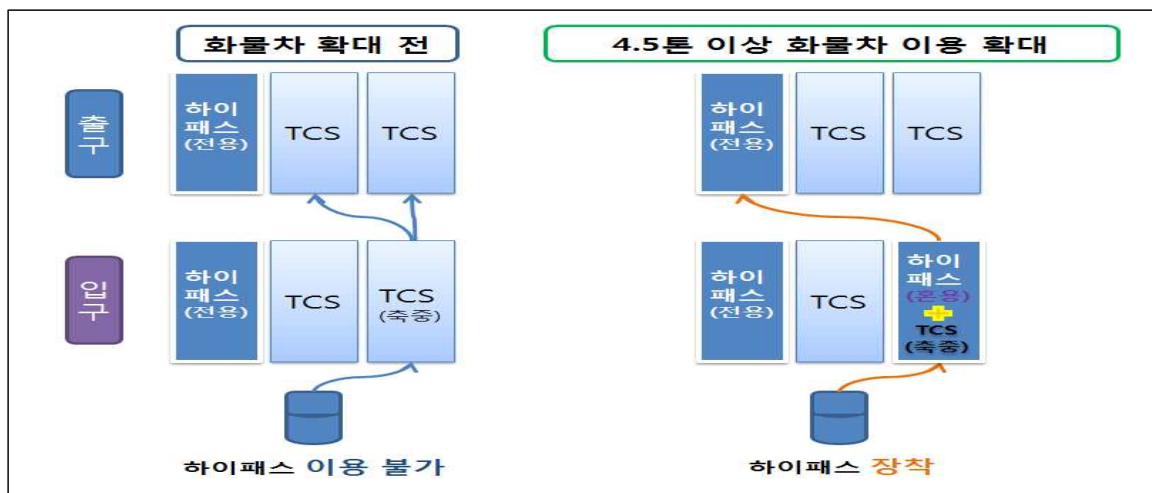
- (현황) 전자상거래, TV홈쇼핑 증가 등으로 택배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, 차량부족, 서비스 품질 저하 등으로 산업발전 지체
 - 지난해 차량을 일부 증차('13.7월, 11,200대)하였으나 수요 증가*에 따라 업계에서 추가 증차 지속 요구('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증차 건의)
 - * 최근 10년('03~'13년)간 택배 물동량은 연평균 15.9% 증가('13년 6.8% 증가), 국민 1인당 연간 택배이용횟수는 '00년 2.4회에서 '13년 35.7회로 증가
 - 차량 부족으로 인한 택배기사의 과도한 업무부담 등에 따라 서비스 품질 저하
- (개선방안) 1.2만대 수준의 택배차량 증차를 추진('14.12월)하되, 서비스 평가와 연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산업 선진화 도모
 - 택배업체를 대상으로 서비스 품질 및 개선노력 등에 대해 서비스 평가*를 실시('14.10월)하여 품질 경쟁 매커니즘 도입
 - * 16개 국내 택배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안전·품질, 서비스 개선 노력 등 서비스 수준을 종합평가하며 구체적인 기준 마련 중

- 서비스 평가 우수업체에 우선 증차하여 품질 개선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
- (기대효과) 적정 경영여건 조성 및 투자 확대, 서비스 경쟁 유도를 통한 택배산업 발전 및 소비자 품질 만족도 제고

(3) 물류 인프라 및 수송분야 효율성 제고

1) 4.5톤 이상 화물차 하이패스 이용 확대

- (현황) 하이패스 전국개통('07.12월) 이후 원활한 화물운송을 위해 4.5톤 이상 화물차도 하이패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
 - * 과적단속 대상이 아닌 4.5톤 미만 화물차는 하이패스 이용 가능
- 화물차 비중이 높은 요금소의 지정체가 지속되어 화물차 운행 비용 상승요인으로 작용
- (개선방안) 과적단속이 가능한 축중차로에 하이패스 신규설치
 - 시범운영* ('14.10~12월) 후 성과를 보아가며 화물차 하이패스 확대('15.8월)
 - * 총 15개 영업소(서울, 마산, 서대전, 순창 등) / 도로공사 소유 100여대의 화물차량 대상



- (기대효과) 화물차 50% 이용 시 물류비 및 환경비용 절감 등 사회적 편익 연간 약 130억원 발생 예상
 - * 통행시간 63억, 운행비용 31억, 환경비용 35억(도로교통연구원, '11.12월)

2) 내륙물류기지 운영 정상화

□ (현황) 물류체계 개선을 위해 5대 권역별 내륙물류기지를 구축·운영하고 있으나,

- 택배 등 국내 생활물류 중심의 IFT 수요는 높은 반면, 수출입 물류 중심의 ICD 운영률은 저조

* (수도권) ICD 78.2, IFT 82.3, (중부권) ICD 7.2, IFT 89.1, (부산권) ICD 11.1, IFT 78.5 등

[참고] 내륙물류기지는 복합화물터미널(IFT: Integrated Freight Terminal)과 내륙컨테이너기지(ICD: Inland Container Depot)로 구성

- IFT : 화물취급장, 집배송센터 등으로 구성, 주로 국내 생활물류를 취급
- ICD : 컨테이너 장치장과 야드로 구성, 주로 수출입 물류를 취급

□ (개선방안) 내륙물류기지를 수요가 있는 기능 위주로 조정하여 시설활용의 효율성 제고

- 우선, 중부권 ICD 내 미활용 부지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화물취급장, 택배 배송센터 등 IFT 시설(약 3만㎡)을 확대*

* 민간투자심의회를 거쳐 당사자간 既 체결한 실시협약 변경('15.상)

- 기타 지역들에 대해서도 ICD 운영사업자의 의견수렴 및 입주 수요 등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추진

- 내륙물류기지내 화주기업이 입주하여 물류기업과 공동작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조·판매시설 유치 활성화

□ (기대효과) ICD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내륙물류기지의 시설 운영률 향상 및 지역의 물류기능 활성화

3) 물류 ICT 기반 확충

- (현황) 물류산업도 ICT와 융합추세에 있으나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제공, 원스톱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간 융합은 미흡
- (개선방안) 수요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(유휴시설, 위험물 등)를 제공하고 통합 정보인프라 구축을 통해 수요자의 편의성 제고
 - (인터넷 물류 직거래 장터) 물류창고의 공실현황 정보 등을 제공하고 직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 구축('14.11월)
 - * 현재 물류기업이 물류서비스(창고, 화물차 등) 이용시 공실정보 등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주선업체를 활용해야하는 등 비효율 발생
 - (화물컨테이너 모니터링 장비 상용화) 위치확인(GPS), 상태(온도/습도) 및 봉인해제 감지 등을 위한 장비 상용화('15년 상반기)
 - (위험물질 운송관리 시스템) 개발이 완료된 차량추적관리 시스템('14.7월) 시범운영*('14.8월~'15.4월) 및 적용범위 확대('15.12월)
 - * 시범운영 규모 : 차량 300여대 선정(국방부, 산업부, 환경부, 국토부 추천)
 - (항공물류정보 통합플랫폼) 항공화물의 운송 및 통관신고를 연계하여 처리하는 시스템 구축('14.12월~)
 - * 현재 시스템 분산 : ① 운송정보-AIRCIS(항공물류정보시스템), ② 적하목록 신고 -KCNET, KTNET(관세청 중계사업자), ③ 수출입/보세신고 -UNIPASS(전자통관)
 - **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해 관세청·국토부 간 MOU 既 체결('13.6월)
 - (해운·항만물류 통합정보서비스) 7개 기관*에 분산된 항만운영정보 시스템(Port-MIS)을 통합하고 항만시설 사용료** 납부체계 통합('15.3월~)
 - * 3개 항만청(부산·인천·여수)과 4개 항만공사(부산, 인천, 울산, 여수·광양)
 - ** 항로표지이용료(항만청), 선박료(항만공사), 방제분담금(해양환경공단)
- (기대효과) 실시간 위치추적 등 수요자 중심의 시스템 구축을 통해 물류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및 맞춤형 정보 제공

4) 철도 장대화 등을 통한 수송 효율화

- (현황) 소규모 분산형 수송방식*은 국제적인 대량수송(50량) 추세와 맞지 않고, 철도물류의 비용·효율성에도 부정적

* '12년 기준, 철도물류취급역 311개소, 편성당 10~33량의 소규모 운영

- 또한, 철도시설 노후화로 인력중심의 고비용 구조로 운영

- (개선방안) 대량수송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개량하고 노후시설을 현대화하여 철도물류의 효율성 제고

- 유라시아 연결 등 국제철도 시대를 대비, 화물열차의 장대편성* (대당 39량이상)을 위한 철도역 유효장 확장** (600m 이상) 추진

* 유럽 등의 경우 통상 50량 이상의 장대열차가 운행되고 있으나, 우리 철도화물 수송수요 고려시에는 39량 수준이 적절

** 경부선 주요 10개역 대상 유효장 확장 추진('14.1~8월 예타중)
→ 1단계로 '17까지 대전이북 4개역(476억원)에 대해 유효장 확장

- 철도물류기지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화물 적치장 확장, 상·하역 장비의 기계화·자동화, 침목 등 노후시설 개량 추진

- (기대효과) 거점·대량수송으로서의 철도물류 기능을 강화하여 물류수송의 효율성을 제고하고, 국제철도시대에 대비

* 사업완료 이후 초년도 478억원 ~ '36년 1,565억원의 사회적 편익 발생

(4) 물류시장 공정거래 질서 확립

1) 화주 및 대형물류기업의 지배력 남용 방지

- (현황) 화주기업은 물류기업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통해 가격인하, 불합리한 계약 변경 등 불공정 거래 고착

- 3자물류 전환 유도, 일감몰아주기 규제로 2자물류는 완화 추세이나, 2자물류기업의 계열사 의존* 및 불공정 하도급은 여전

* 주요 2자물류 회사의 '12년도 2자물류 비율은 평균 56%

- (개선방안) 물류회사의 모기업 의존,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, 불공정 계약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(연1회)
 - 조사 결과에 따라 불공정사태에 대해 개선권고 하고, 종합물류기업 인증 평가 시 결과 반영
- (기대효과) 3자물류 비중 확대 및 건전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

2) 지입제 관련 화물차주 권리보호

- (현황) 운송시장에서 오랜시간에 걸쳐 지입제가 보편화되어 사업권을 위탁받아야 하는 차주에 대해 운송업체가 우월적 지위
 - 차량 실소유자인 차주의 재산권 침해*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지입차주 보호 강화 필요
 - * 차량이 운송업체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(법적으로 차량이 운송업체 소유), 실소유주 동의없는 차량 매매 또는 차주의 귀책사유 없는 압류 발생
- (개선방안) 지입차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차주 동의없는 차량의 매매·압류 등에 대한 처벌기준 마련(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, '14.12월)
 -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한 운송업체-차주간 상생거래 가이드라인 마련 및 업계 이해관계자의 자율준수 선언 추진('14.12월)
- (기대효과) 지입차주 권리 보호 및 근로여건 개선으로 화물운송시장의 공정성·안정성 확보

(5) 물류분야 규제개선

1) 통관취급법인 직접운송 요건 완화

- (현황) 관세사 외에 일정한 자격요건(시설·장비·자본금 등)을 갖춘 통관취급법인에게는 통관업무를 허용
 - 최근 관세사법 개정('14.1월)으로, 그간 고시를 통해 통관취급법인에게 부과하던 직접운송 의무를 법에 직접 규정

- 고시로 허용하던 직접운송 예외사유 인정범위도 제한(관세사법 시행령)함에 따라 통관취급법인의 부담 가중

□ (개선방안) 통관취급법인에 대한 직접운송의 예외사유를 확대* (관세사법 시행령 개정, '15년 상반기)

* (예) 장비·시설 등이 일시적으로 부족하여 직접운송이 어려운 경우 등

□ (기대효과)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·비용 감축으로 효율성 강화

2) 물류기업 인증제도 개편

□ (현황) 물류산업내 분야별 전문기업 육성, 산업 활성화 및 고객서비스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해 7개 인증제 운영

* 종합물류기업('06), 글로벌물류기업('12), 우수화물운송업체('08), 우수물류창고업('12), 우수화물정보망('13),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('14), 우수국제물류주선업('14)

○ 다수 인증제 운영에 따른 법적 근거 및 인증 대행기관 분산*, 절차 중복 등으로 비효율 및 기업 부담* 발생

* 1개의 인증을 받는 경우, 건당 250만원~300만원의 수수료 발생

구분	종물업	주선업	녹색물류	글로벌	창고업	정보망	화물운송
대행기관	한국교통연구원	국제물류주선협회	교통안전공단	한국교통연구원	한국통합물류협회	한국교통연구원	한국능률협회
법적근거	물류정책기본법			국토·해수부 고시	물류시설법	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	

□ (개선방향) 7개 인증제의 목적 및 효과를 종합 검토하여 유사 인증 통·폐합 및 인증 절차 간소화 추진('15년 하반기)

○ 업계·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인증 목적 및 효과가 유사한 인증제를 통합하고 인증 기준도 통합·간소화

○ 「물류정책기본법」으로 인증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일원화하고, 인증 대행기관 통합 추진

□ (기대효과) 인증 기준 및 절차 간소화로 효율성 및 물류기업 편의가 향상되고 다수 인증에 따른 수수료 부담 경감

(1) SW융합 클러스터 조성

- (현황) SW는 창조경제의 핵심요소로서 각국의 SW산업은 수요 기업과 인적·물적 인프라가 밀집된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발전
 - * 실리콘밸리(미국, 1970~), 실리콘와디(이스라엘, 1980~), SW테크노파크(인도, 1990~), SW클러스터(독일, 2011~), SW클러스터(중국, 2012~)
- '13년 대구를 SW클러스터로 선정하였으나, 타지역도 지역 산업과 SW의 원활한 융합을 위해 클러스터 지정이 필요
- (개선방안) 산업단지, 테크노파크 등 기존의 지역클러스터를 SW융합 클러스터로 조성하여 창조경제 선도지역으로 육성
 - SW관련 산·학·연의 원활한 연계·협력이 가능한 지역 3곳을 추가적으로 선정('14년)하는 등 SW융합 클러스터를 확대
 - * '13년 1개(대구) → '14년 3개(판교·송도·부산) → '15년 이후 단계적 추가
 - SW융합 클러스터 별로 지역특화 산업과 SW의 융합 R&D, 산학연 네트워킹, SW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여 성과 조기창출 추진
 - 입주기업에 SW 품질 테스트베드·시제품 제작·회의실 등 인프라 지원 및 애로사항 해결 원스톱 서비스 제공
- (기대효과) 지역 특화·전략산업과 SW의 결합을 통해 지역산업 경쟁력 향상 및 지역 SW산업 육성
 - * '17년까지 벤처 창업 700여개, 일자리 1만 3천명 이상

[2] SW 융합 신산업 창출

- (현황) 중국 등 후발국가의 추격심화 등으로 새로운 제품·서비스 창출이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나, 국내 산업은 SW활용이 미흡(선진국의 1/3)하여 새로운 제품·서비스 창출에 한계
 -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 대비 SW활용격차*가 커 경쟁력 확보가 곤란한 상황
 - * 중소기업의 SW·IT활용수준(대기업 100점) : '09년 47점 → '13년 55점
- (개선방안) 쏠 산업에서의 SW융합을 촉진하여 신제품/서비스 시장*을 창출하고 기존 제품·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
 - * (세계) '11년 1,800억불→'16년 3,167억불, (국내) '11년 28억불→'16년 80억불
 - 신제품·서비스 창출을 위한 융합SW기술개발을 강화('14년, 350억)
 - (신규 R&D 지원) 위험부담은 크나 세계최초·최고를 지향하는 아이디어를 집중 지원하고,
 - (기존 R&D 지원) 성과가 낮은 경우(15% 내외) 조기완료하여 신규과제 예산 확충
 - 에너지 신산업과 ICT의 융·복합을 통한 에너지 생산·소비 효율화 등 기후변화 대응 시장 선점기반 마련
 - * 에너지관리 시스템(EMS), 스마트그리드 등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통합관제 프로그램 등 SW를 개발하고, 소스코드 공개 등 개방형 플랫폼 구현
 - 기존산업·중소기업의 SW활용을 제고하여 신시장·신산업 창출 기반을 마련

구분	개요	예시
고부가가치형	· 기존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SW를 융합시켜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	· 건강관리 신발
생산성 향상형	· 중소기업이 생산활동 전 과정을 SW로 혁신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	· 지능형축사관리 · 스마트공장

- (기대효과) 기존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SW 신시장 창출
 - * SW융합 신시장 및 신규 고용 창출('17년까지 벤처 창업 1,100여개, 일자리 1만 5천명 이상)

[3] SW를 활용하여 재난안전 대응체계 업그레이드

- (현황) 사회 각 분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HW 뿐 아니라 이의 운영체제 등 SW의 안전성 확보가 필수
 - 그러나 현실에서의 안전점검은 HW중심*으로 이루어지고 있어, SW 안전성에 대한 점검·개선 노력은 미흡
 - * (예시) 공항 정기점검(1일 1회 이상) : 포장지역, 착륙대, 표지판, 항공안전 시설, 장애물, 급유, 제설 및 이동지역 작업 등 HW중심 점검 실시
- (개선방안) 국민안전과 직결된 분야에 대한 SW안전성을 강화하는 한편, SW를 활용한 재난대응체계 효율화 추진
 - 교통·금융 등 주요시설(정보통신기반시설 292개·국가기반시설 260개 포함)의 SW안전성 평가, 컨설팅, 기술연구 실시('15년~)

< SW안전성 평가 계획(안) >

- ▶ (대상)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, 국가기반시설 내 SW 중 매년 100개 내외
 - * 교통(예 : 승차권예약발매시스템), 재난재해(예 : 긴급구조시스템), 생활(예 : 병원정보시스템) 등 분야별 시급성,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
- ▶ (방식) SW의 기능성(요구사항에 맞는 수행), 상호 운영성, 신뢰성(결함 여부) 등을 점검·평가(SW당 평균 6~8명 투입)
 - *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른 보안 취약성 점검·평가와 연계하여 추진

- 재난안전 관련 SW플랫폼을 개발·구축하고, 이를 기반으로 재난안전 대응체계 고도화 추진('15년~)
 - CCTV, 스마트센서, 무인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 감지·예측을 위한 재난정보 수집기술 개발
 - 4D, 증강현실 기술 등을 활용하여 실제 위험상황에서의 대처 요령 등을 습득할 수 있는 실감형 안전교육 SW·콘텐츠 개발
- (기대효과) 기존 예방/대응체계를 보완하여 효과성을 제고하고, 향후 5년간 약 2,000억원 규모의 SW안전성 평가 시장 창출
 - 안전성 평가결과에 따라 주요시설 SW 유지보수 및 개선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

(4) 무제한 인터넷 주소체계 IPv6 도입 확산

- (현황) 현재의 IPv4 체제로는 IP주소가 한정되어 막대한 IP주소를 필요로 하는 사물인터넷(IoT), 빅데이터 등 신산업 창출에 장애
 - 기업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, 장비 교체, SW 업데이트 등 투자비 부담, 시스템 개발·운영 인력 부족 등으로 IPv6 도입 저조

- (개선방안) IPv6 도입시 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세제 감면, 전문 인력 양성, 공공분야 선제적 도입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 마련
 - (세제감면) 대부분의 기업이 금년 말까지 IPv6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제감면* 기간 3년 연장 추진
 - * IPv6 장비(라우터, 스위치) 도입 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(중소기업 7%, 대기업 3%)
 - (전문인력 양성) IPv6 주소관리자, 네트워크 관리자, ICT엔지니어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·운영(연간 1,200명)
 - * IPv6 종합지원센터('14.5월~) : IPv6 전문인력 및 기술력이 부족한 영세·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, 컨설팅, 테스트베드 제공 등 종합 지원
 - (IPv6 서비스 상용화) 'IPv6 상용화 지원 협의회' 운영 및 민관 협력사업을 통한 LTE·유선인터넷 상용화 개시 지원
 - (공공부문 도입) 정부·공공기관(594개)이 적극적으로 IPv6를 도입하여 민간분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* 추진('15년 하반기)
 - * 정부·공공기관이 네트워크 장비 및 웹사이트를 신규 구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IPv6를 적용하도록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 추진

- (기대효과) 기존 IPv4 주소자원 부족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, 모든 인터넷 기기에 무제한의 주소자원 제공 가능
 - * 국내 인터넷 관련 기업(369개)은 '14~'20년까지 IPv6 장비구입, 소프트웨어 구입 및 업데이트 등에 2.1조원 투자예정('13년, 한국인터넷진흥원)
 - 무제한의 IP주소 공급으로 사물인터넷(IoT), 빅데이터, 클라우드, 홈네트워크 등을 연계한 다양한 융합서비스 활성화 기반 마련

(1) 중기제품·농수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TV홈쇼핑 제도 개선

- (현황) 홈쇼핑은 상품판매와 동시에 광고기능까지 수행하므로 기업의 매출증대 및 홍보효과를 제공하는 좋은 판로
 - 홈쇼핑채널은 미래부장관 승인사항으로 현재 6개사*가 사업 시행 중
 - * 채널승인시기: ('95) CJ, GS → ('01) NS, 현대, 롯데 → ('11) 홈앤쇼핑
 -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해 중기제품 전용 홈쇼핑채널인 홈앤쇼핑이 설립('11)되었으나, 여전히 납품업체들의 방송수요를 흡수하는 데 한계
 - 중기제품이나 농수산식품은 오프라인 유통구조에 진입하기 쉽지 않아 판로확보를 위해 홈쇼핑 진입 장벽을 완화해 줄 필요
- (개선방안) 홈쇼핑 채널간 경쟁 유도, 국내 중소·벤처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 TV홈쇼핑 제도 개선방안 마련
 - 중기제품·농수산물 전용 공영 홈쇼핑 채널 신설('15년)
 - * 초기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의 창의·혁신상품을 다양하게 수용하고, 기존 홈쇼핑사에 비해 낮은 판매수수료율 책정
 - 이와 병행하여 데이터방송 홈쇼핑*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('14.12월)
 - *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디지털TV에서 리모컨으로 소비자가 관심있는 상품을 골라 구매와 결제까지 할 수 있는 방송 서비스(현재 2개사 사업시행 중)
- (기대효과) 유통망 확충을 통해 초기 기업들의 성장궤도 안착을 지원하고, 창업을 촉진
 - 홈쇼핑 업계의 경쟁을 촉진하여 우월적 지위에 따른 불공정 거래관행을 완화

[2] SW기업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

- (현황) 세계 1위의 전자정부 서비스를 발판으로 전자 주민증 발급, 전자 통관시스템 등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
 - * 전자정부 수출(억불) : ('12) 3.4 → ('13) 4.2
 - 그러나, 해외 발주국이 선호하는 대기업은 국내 사업참여 제한으로 관련 수주실적을 쌓을 수 없어 해외진출에 애로
 - * '13.1월부터 공공발주 SW사업에 대기업 참여가 제한(SW산업진흥법)
 - 중소 SW기업의 경우에도 해외진출 사례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, 아직은 도약 단계에 불과
 - * M사는 건설설계 해석 SW분야 세계 1위, E사 사우디아라비아에 병원 정보시스템 수출('14.6월)
- (개선방안) ITU전권회의('14.10.20~11.7)*를 ICT기업 해외수출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, SW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제도도 보완
 - * 193개국 ICT 장관들이 참석하여 글로벌 ICT 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최고위급 총회(4년 주기, 3주간 개최)로 ICT 올림픽에 해당
 - ITU 전권회의 기간중에 참여한 국가와 SW기업(전자정부 포함) 수출 확대를 위한 MoU체결 추진
 - * SW 공공정보화 관련 최근 5년간 약 30건의 MoU 체결
 - MoU체결 국가에 IT대기업이 국내 중소 IT기업의 제품을 선택하여 선단형으로 해외진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
 - * 전자정부 등 정보화 성공사례집을 마련하여 ITU 회원국에 사전 배포함으로써 전권회의 기간중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
 - SW대기업이 ODA사업 참여를 신청*하는 경우 법상 대기업 참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'외교분야에 포함하여 심의('14.12월)
 - * 필요시 고시 개정 등 제도화방안 검토
 - ** 현행 예외적 참여 허용 대상 : 국방, 외교, 치안, 전력 및 그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
 - 글로벌 히든챔피언 육성을 위해 R&D 지원에 중점을 두었던 기존 GCS*사업을 확대 개편하여 사업화·수출 컨설팅 지원 강화
 - * GCS(Global Creative SW): '17년까지 민관합동 4천억원 투입목표

- (기대효과) 해외진출 도약단계에 있는 중소 SW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,
 - IT서비스 대기업은 ODA실적을 수주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해외진출 확대 기대

(3) 이동통신 품질평가 제도개선

- (현황) 이용자의 합리적인 상품선택을 지원하고, 통신사업자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통신서비스 품질 평가제도 시행 중
 - 그동안 등급제*로 발표하던 이동통신의 평가결과가 기술향상, 운영방식 개선 등으로 상향 표준화되어 변별력이 약화
 - * 음성통화 및 무선인터넷의 품질을 각각 평가하여 S(매우우수), A(우수), B(보통), C(미흡), D(매우미흡)으로 평가
- (개선방안) 객관적 품질 비교를 통해 통신서비스의 실질적인 품질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 개선
 - 등급제를 폐지하고, 속도, 접속성공률, 전송성공률, 지연시간, 패킷손실률 등 평가지표를 세분화하여 절대치로 공표('14.12월)
 - 품질이 취약한 해안, 여객선항로, 도서산간 등을 평가에 포함('14.12월)
 - 소비자 감소에 따라 이통사의 관심이 낮아진 2G의 품질보장을 위해 품질평가의 대상을 2G까지 확대('15년)

<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개선방안 >

	기존	개선
평가지표	· 서비스별 · 사업자별 · 지역별 전송등급 및 전송속도	· 등급제 폐지 · 전송속도에 접속성공률, 전송성공률, 지연시간, 패킷손실률 등 지표추가
평가지역	· 도시, 농촌 등 행정지역	· 해안, 항로, 도서산간 등 포함
대상 서비스	· 음성통화(3G) · 무선인터넷(LTE, 3G, WiBro, WiFi)	· 음성통화(2G, 3G, VoLTE) · 무선인터넷(LTE, 3G, WiBro, WiFi)

- (기대효과) 무선서비스에 정부평가를 집중하여 광대역LTE, 광대역LTE-A 등의 안정화 및 고도화를 위한 투자 확대 유도
 - 통신 품질개선의 유인이 낮은 통신서비스 소외지역 및 2G 사용자들의 통신권 보장과 국민생활 안전 확보에 기여

IV. 세부 추진계획

추진과제	소관부처	추진일정
1. 보건의료 서비스		
1-1. 프로젝트 과제		
1-1-1. 중소·중견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지원		
1-1-1-1. S의료법인의 메디텔 자법인 -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- 문체부 고시 제정 -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	문체부 문체부 복지부	14.8월 14.8월 14.8월
1-1-1-2. S, B의료법인의 해외의료진출 특수목적법인 - 정책금융지원 추진 및 컨설팅 제공	복지부 기재부	계속
1-1-1-3. H의료법인 해외환자유치 자법인 - 부대사업 범위 확대 의료법 개정안 제출	복지부	14.下
1-1-2.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		
1-1-2-1. 경자구역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규제 완화	산업부 복지부	계속
1-1-2-2. 제주도 제1호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승인 확정	복지부	14.9월
1-1-3.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		
1-1-3-1. 기술지주회사 설립요건 검토·승인	교육부	14.9월
1-2. 제도개선 및 기반조성 과제		
1-2-1. 해외환자 연환자 기준 150만명 유치		
1-2-1-1. 「(가칭)국제의료 특별법」 법률안 제출	복지부	14.下
1-2-1-2. 국제진료비 정보제공 언어 확대	복지부	14.8월
1-2-1-3. 온라인 플랫폼 시스템 구축	문화부	15.上
1-2-1-4. 해외환자 진료기관 평가결과 공개	복지부	15.上
1-2-1-5.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허용	복지부	14.下

추진과제		소관부처	추진일정
1-2-1-6.	직불계약 확대 및 보험상품 개발 촉진	복지부	계속
1-2-1-7.	의료비자 별도 심사 시스템 구축	법무부	15.上
1-2-1-8.	중동 환자송출계약 확대	복지부	계속
1-2-1-9.	국내연수 해외의료진 관리 DB 구축	복지부	14.下
1-2-1-10.	‘(가칭)국제환자지원센터’ 설립	복지부	16.下
1-2-1-11.	해외 검진 및 원격의료 센터 설립	복지부	계속
1-2-2. 의료 분야 해외진출 확대			
1-2-2-1.	중소병원 해외진출 지원펀드 설립	복지부	14.下
1-2-2-2.	ODA 활용 해외진출 촉진 협의체 신설	복지부	14.下
1-2-2-3.	공공기관 의료정보시스템 수출 추진	복지부	계속
1-2-2-4.	KMH 공공기관 출자 확대	복지부	14.下
1-2-2-5.	Medical Korea 거점공관 지정	복지부	계속
1-2-3. 의료기관 연구 활성화			
1-2-3-1. 신약·신의료기술 개발 촉진			
1-2-3-1-1.	줄기세포 치료제 임상 인정범위 확대	식약처	14.下
1-2-3-1-2.	유전자 치료제 연구 허용 기준 완화	복지부	14.下
1-2-3-1-3.	제한적 의료기술 선정 확대	복지부	계속
1-2-3-1-4.	임상시험시 보험급여 적용 검토	복지부	15.上
1-2-3-2.	연구중심병원 육성	복지부	계속
1-2-4. 의료정보 보호 및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 조성			
1-2-4-1.	「건강정보 보호 및 활용법」 제정안 마련	복지부	14.下
1-2-4-2.	보건의료용어 국가표준 개발	복지부	14.8월
1-2-4-3.	국민건강정보 통합 DB 구축	복지부	16.下

추진 과제		소관부처	추진일정
2. 관광·콘텐츠 서비스			
2-1. 프로젝트 과제			
2-1-1. 복합리조트 설립 지원			
2-1-1-1. 복합리조트 마스터플랜 마련	문체부	14.12월	
2-1-1-2.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자 추가선정을 위한 공모절차 진행	문체부	15.上	
2-1-2.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한 국제테마파크 유치			
2-1-2-1. 산업입지법 개정	국토부	14.下	
2-1-3.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			
2-1-3-1. 양양군 케이블카 설치	양양군 환경부	16년	
2-1-3-2. 전국지역 케이블카 실태조사 실시	문체부 등	14.12월	
2-1-4. 무역센터 일대 한류중심지화 추진			
2-1-4-1. 무역센터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	서울시	14.11월	
2-1-4-2. 관광특구내 공개공지에서 공연·음식제공 허용	문체부	15.6월	
2-1-4-3. 전시장내 간단한 조리음식 판매 허용	식약처	15.6월	
2-1-4-4. 미디어파사드 영상 연출시간 연장	서울시	14.12월	
2-2. 제도개선 및 기반조성 과제			
2-2-1. 중국관광객 친화적 관광환경 조성			
2-2-1-1. 중국인 관광객 전용 케이블 TV 채널 신설	문체부	15.12월	
2-2-1-2. 전자비자 제도 실행	법무부	15.1/4	
2-2-1-3. 대중교통 등에 중국어 표기 확대	문체부	계속	
2-2-1-4. 우수음식점 가이드북 제공	관광공사	14.12월	
2-2-1-5. 중국인 관광객들이 '다시 찾고 싶은 대한민국'을 만들기 위한 대책 마련	문체부	14.下	

추진 과제		소관부처	추진일정
2-2-2. 한강 주변지역 관광자원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			
2-2-2-1. 한강 및 한강 주변지역 관광자원화 마스터플랜 수립	서울시 국토부 문체부	15.上	
2-2-2-2. 하천 수목식재 간격기준 개정	국토부	15.上	
2-2-3. 산지관광 활성화			
2-2-3-1. 산악관광 특구제도 도입	문체부 환경부 산림청	15.1/4	
2-2-3-2. 자연휴양림 등에 트리하우스 등 도입	산림청 문체부	14.下	
2-2-3-3. 체험·휴양형 공원시설 확대	환경부	~17년	
2-2-4. 외국인에 대한 휴양콘도미니엄 1인 분양 허용 확대			
2-2-4-1. 제주 이외 지역 외국인 1인분양 허용	문체부	14.10월	
2-2-4-2. 영종도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확대	법무부	14.12월	
2-2-5. 관광호텔 설립 촉진			
2-2-5-1. 관광진흥법 개정	문체부	14.下	
2-2-5-2. 용적률 특례 등 연장	문체부	15.12월	
2-2-5-3. 조경면적 완화	문체부	14.12월	
2-2-5-4. 호텔설립 가용부지 확보 방안 마련	문체부 국토부	15.上	
2-2-6. 관광단지 조성 활성화			
2-2-6-1. 조성토지를 조성원가로 처분하도록 허용	문체부	14.下	
2-2-6-2. 관광사업계획 승인시 협의절차 개선	문체부	14.下	
2-2-7. 자연휴양림 이용편의 제고			
2-2-7-1. 통합 예약시스템 구축	산림청	16년	
2-2-7-2. 예약방식 개선	산림청	15.上	
2-2-7-3. 자연휴양림 확대	산림청	~17년	
2-2-8. 스포츠·컨벤션 시설 등 유휴시설 활용 촉진			
2-2-8-1. 유휴시설 수익 창출 방안 마련	문체부	15.上	

추진 과제		소관부처	추진일정
3. 교육 서비스			
3-1. 프로젝트 과제			
3-1-1. 글로벌수준의 외국교육기관 유치			
3-1-1-1. 특화 외국교육기관 유치	산업부 교육부	14년~	
3-1-1-2.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차별 해소	교육부	14.12월	
3-1-1-3. 외국교육기관 설립주체 확대	교육부	15.1/4	
3-1-1-4. 글로벌교육 프로그램 유치·집적방안 마련	교육부 산업부	15.上	
3-1-2. 어학캠프 활성화			
3-1-2-1. 어학캠프 확대 방안 마련	교육부	14.11월	
3-1-3. 대학기술지주회사 활성화			
3-1-3-1. 기술개발자 인센티브 부여	교육부	15.1/4	
3-1-3-2. 기술지주회사 의무 출자 비율 완화	교육부 산업부	15.1/4	
3-1-3-3. 산학연 협력 관련 재정사업 개편	미래부 교육부	15.6월	
3-2. 제도개선 및 기반조성 과제			
3-2-1. 국내기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			
3-2-1-1. 국내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여건 개선	교육부	14.3/4	
3-2-1-2. 우수민간교육·훈련기관 해외유학생 유치 허용	법무부 교육부	15년	
3-2-2 사내대학 설립 촉진			
3-2-2-1. 사내대학 설립·운영요건 조정	교육부	15.1/4	
3-2-3. 폴리텍을 통한 서비스인력 양성			
3-2-3-1. 서비스특화 폴리텍 설립 추진	고용부	15년~	
3-2-4. 해외유학 복귀자에 대한 수용 여건 개선			
3-2-4-1. 해외유학 복귀자 지원방안 마련	교육부	14.12월	

추진과제		소관부처	추진일정
4. 금융 서비스			
4-1. 프로젝트 과제			
4-1-1. 기술평가를 토대로 하반기 금융지원 확대			
4-1-1-1. 기술신용정보를 활용한 대출 시행	금융위	14.12월	
4-1-1-2. 우수창업 기업 등 연대보증 면제 확대	금융위	14.12월	
4-1-1-3. 창업자 자금지원 대상 확대	금융위	14.10월	
4-1-2. 중소·중견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금융지원 강화			
4-1-2-1. 성장사다리펀드를 통한 자금지원 강화	금융위	14.12월	
4-1-2-2. 우수창업기업에 투자와 융자 복합 지원	금융위	14.12월	
4-1-2-3. 실리콘밸리 VC 등과 공동펀드 조성	중기청	14.12월	
4-1-2-4. 기술개발제품 판로 확대	중기청	14.9월	
4-1-3. 유망기업의 상장활성화 기반 마련			
4-1-3-1. 상장기업 인센티브 확대	금융위 기재부 법무부	14.12월	
4-1-3-2.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	금융위 고용부	14.12월	
4-1-3-3. 낯은 규제 합리화	금융위	14.12월	
4-1-4. 유망서비스산업 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			
4-1-4-1. 유망서비스산업 지원펀드 조성	금융위	15년중	
4-1-4-2. 각 산업분야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	금융위	15년중	
4-2. 제도개선 및 기반조성 과제			
4-2-1.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			
4-2-1-1.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	고용부	15.7월	
4-2-1-2. 자산운용규제 완화	금융위 고용부	15.12월	
4-2-1-3. 세제 인센티브 강화	기재부	15.12월	
4-2-2. 금융지주회사의 전략기능 활성화			
4-2-2-1. 융합금융서비스 활성화	금융위	14.12월	
4-2-2-2. 해외진출 촉진	금융위	14.12월	
4-2-2-3. 지배구조 합리화	금융위	14.12월	

추진과제		소관부처	추진일정
5. 물류 서비스			
5-1. 프로젝트 과제			
5-1-1. 지역별 특성에 맞는 물류시설 확충			
5-1-1-1. 지역수요를 반영한 물류단지 공급 확대	국토부	14.下	
5-1-1-2. 고속도로 휴게소를 활용한 물류시설 구축	국토부	15년~	
5-1-2. 인천공항 물류허브 기능 강화			
5-1-2-1. 인천공항 글로벌 배송센터 유치			
5-1-2-1-1. FTZ내 부가세 영세율 적용 확대	산업부	15.6월	
5-1-2-1-2. FTZ 반출입에 대한 화물관리 강화	관세청	15.上	
5-1-2-2. 인천공항 직행 화물 KTX 도입	국토부	~20년	
5-1-2-3. 인천공항 배후단지 용도지역 변경	국토부 지자체	14.12월	
5-1-3. 항만의 효율적 활용기반 구축			
5-1-3-1. 항만 배후단지 활성화	해수부	~19년	
5-1-3-2. 민자유치를 통한 항만 활용도 제고	해수부 중기청	14.12월	
5-2. 제도개선 및 기반조성 과제			
5-2-1. 전문물류기업 육성 및 해외진출 확대			
5-2-1-1.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업 육성			
5-2-1-1-1. 3자물류 세액공제 확대 및 컨설팅	기재부 국토부	14.12월	
5-2-1-1-2. 공공조달 입찰시 가점 부여	조달청	14.10월	
5-2-1-1-3. SCM 역량 제고 방안 마련	국토부	14.12월	
5-2-1-2.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강화	중기청	15.1월	
5-2-1-3. 유라시아 물류 진출 확대	국토부 해수부 등	계속	

추진과제		소관부처	추진일정
5-2-2. 택배산업 선진화			
5-2-2-1. 택배차량 증차		국토부	14.12월
5-2-2-2. 택배업체 서비스평가 실시		국토부	14.10월
5-2-3. 물류 인프라 및 수송분야 효율성 제고			
5-2-3-1. 4.5톤 이상 화물차 하이패스 이용 확대		국토부	15.8월
5-2-3-2. 중부권 ICD내 IFT 시설 확대		국토부	15.上
5-2-3-3. 물류 ICT 기반 확충			
5-2-3-3-1. 인터넷 물류 직거래 장터 구축		국토부	14.11월
5-2-3-3-2. 화물컨테이너 모니터링 장비 상용화		국토부	15.上
5-2-3-3-3. 위험물질 운송관리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		국토부	15.12월
5-2-3-3-4. 항공물류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		국토부	14.12월~
5-2-3-3-5. 해운·항만물류 통합정보 서비스 구축		해수부	15.3월~
5-2-3-4. 철도 장대화 등을 통한 수송 효율화			
5-2-3-4-1. 화물열차 유효장 확장		국토부	~17년
5-2-3-4-2. 철도 물류기지 노후시설 개량		국토부	~18년
5-2-4. 물류시장 공정거래 질서 확립			
5-2-4-1. 화주 및 대형물류기업의 지배력 남용 방지		국토부	계속
5-2-4-2. 지입제 관련 화물차주 권리보호		국토부	14.12월
5-2-5. 물류분야 규제개선 및 물류정책 추진체계 정비			
5-2-5-1. 통관취급법인 직접운송 요건완화		기재부	15.上
5-2-5-2. 물류기업 인증제도 개편		국토부 해수부 등	15.下
6. 소프트웨어·정보통신 서비스			
6-1. 성과 구체화 프로젝트			
6-1-1. SW융합 클러스터 조성			
6-1-1-1. 입주기업에 인프라 지원		미래부	계속

추진 과제		소관부처	추진일정
6-1-2. SW 융합 신산업 창출			
6-1-2-1. 융합 SW기술개발 강화		미래부	계속
6-1-3. SW를 활용한 재난안전 대응체계 업그레이드			
6-1-3-1. SW안전성 평가 실시		미래부	15.6월
6-1-3-2. 재난안전 관련 SW플랫폼 개발·구축		미래부	15.12월
6-1-4. 무제한 인터넷 주소체계 IPv6 도입 확산			
6-1-4-1. 세제감면 기간 연장		미래부 기재부	14.12월
6-1-4-2. IPv6 전문인력 양성		미래부	계속
6-1-4-3. IPv6 서비스 상용화 지원		미래부	계속
6-1-4-4. 공공분야 선제적 도입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		미래부	15.12월
6-2. 제도개선 및 기반조성 과제			
6-2-1. 중기제품·농수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TV홈쇼핑 제도 개선			
6-2-1-1. 중기제품·농수산물 전용 공영 홈쇼핑 채널 신설		미래부 중기청	15.12월
6-2-2. SW기업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			
6-2-2-1. ITU기간 중 참여국과 MoU체결 추진		미래부	14.12월
6-2-2-2. 대기기업의 ODA참여 예외적 허용		미래부	14.12월
6-2-2-3. GCS사업으로 확대 개편		미래부	14.12월
6-2-3. 이동통신 품질평가 제도개선			
6-2-3-1. 등급제 폐지 및 평가지표 세분화		미래부	14.12월
6-2-3-2. 해안, 여객선항로 등을 평가에 포함		미래부	14.12월
6-2-3-3. 품질평가 대상을 2G까지 확대		미래부	15.12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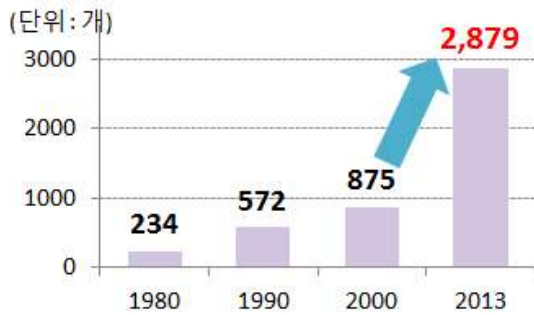
1. 보건·의료 서비스

(1) 업종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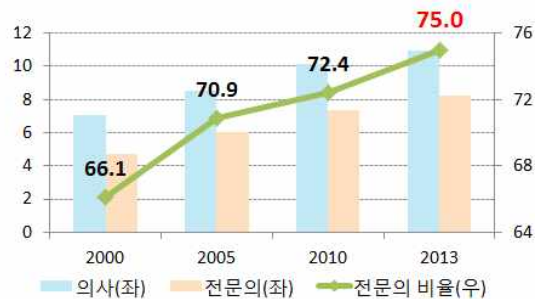
□ '00년 이후 의료산업은 양적측면에서 빠르게 성장

- 병원·병상 수가 크게 증가하고, 전문의 비율도 지속 상승

< 병원 수 >



< 의사·전문 의 수 >



□ 그러나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는 여전히 미흡

- GDP 대비 의료서비스 비중이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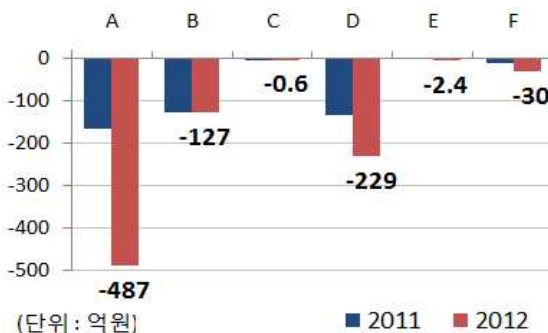
* GDP 대비 의료서비스 비중('12년, %, 보건산업진흥원): (OECD) 8.4 (한국) 4.9

- 진료에 의존한 경영구조*로 연구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이 미흡하고 의료기기·의약품 등 연관산업과의 융복합 지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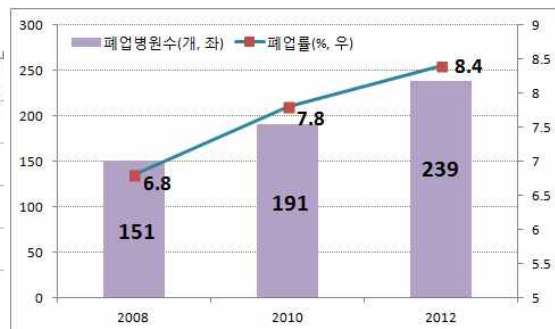
* 非진료 수익 비중: (美 MD앤더슨 암센터) 22% (삼성병원) 5%

- 최근 병원 경영실적이 악화되고, 폐업병원도 증가 추세

< 상급 종합병원 경영실적 >



< 폐업병원 현황 >



(2) 그간의 정책성과 및 향후과제

- 보건·의료 서비스분야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일부 성과 시현
 - '09년 해외환자 유치 허용 이후, 해외환자 규모가 빠르게 증가*
 - * 해외환자 수(實환자 기준, 만명) : ('09)6.0 ('10)8.2 ('11)12.2 ('12)15.9 ('13)21.1
 - 제주도와 경자구역에 투자개방형 외국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('12.10월)
 - 13개 안전상비 의약품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('12.11월)
 - 지난해에는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, 부대사업 확대, 해외환자 유치 확대 등을 위한 방안 마련(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, '13.12월)
- 제도 개선 과정에서 이해관계 상충, 의료영리화 논쟁 등 어려움도 상존
 - 상당수 과제가 법제화로 이어지지 못하거나 실제성과 미도출
 - * 건강관리서비스업 법안이 두차례 제출('10.5월, '11.4월)되었으나 국회 계류중 폐기
제주도, 경자구역내 투자개방형 의료기관 유치 사례 전무
 - 자법인, 원격의료 등 최근 마련한 정책과제의 이행과정에서도 의료 민영화·영리화 논란, 의료계 파업 등 사회적 갈등 재현

- ⇒ 보건·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성공사례를 창출·확산하는 데 주력
 - 의료법인 자법인 등 개별 프로젝트별 접근을 통해 투자자 애로를 원스톱으로 해소하고 가시적 성과를 조기에 도출
 - 의료서비스 수요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보건·의료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

2. 관광·콘텐츠 서비스

(1) 업종 현황

- 최근 5년간('08~'13년) 관광·콘텐츠산업은 해외관광객 수(76.6%), 관광수입액(46.1%), 콘텐츠 매출액(44%), 수출액(118%) 등 양적 성장
 - * 해외관광객 추이(단위:명) : ('05)602만→('08)689만→('10)880만→('13)1,217만
 - * 관광수입액(단위:억불) : ('05)58→('08)97→('10)103→('13)142
 - * 콘텐츠산업 매출액 : ('08) 63.7조원→('10)73.3조원→('12)87.3조원→('13)91.5조원
 - * 콘텐츠산업 수출액 : ('08) 23.4억불→('10)31.9억불→('12)46.1억불→('13)51억불
- K-POP 등 한류 확산, 관광여건 개선(쇼핑, 숙박시설 등)으로 중국, 홍콩 등 아시아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
- 종사자 수는 관광산업 약 23만명('12년 기준)으로 연평균 6.6% 증가, 콘텐츠산업 약 61.8만명('13년 기준)으로 연평균 2.4% 증가
-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관광산업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고 관광수지 적자가 지속('13년 △35.3억\$)되고 있는 상황
 - * 13년 한국인 출국자 수는 1,485만명이며, 1인당 지출액은 254만원
 - ** 1위 스위스, 10위 싱가포르, 14위 일본, 15위 홍콩, 25위 한국, 33위 대만
- 다양한 관광상품이 부족하고 복합리조트 등 주요 관광시설이 주변 경쟁국가에 비해 미흡
- 해외관광객 증가추세에 비해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 증가율은 낮아 관광인프라가 취약
 - 지난 5년간 해외관광객의 증가는 연평균 12%씩 증가하고 있으나 관광호텔 객실수는 연평균 3.5%씩 증가
 - * 관광객(단위:만명) : ('09)781→('13)1,218 vs 객실수(단위:실) : ('09)108,454→('13)126,311
- 국내 콘텐츠산업은 한류 등으로 수출이 급성장(5년간 16.9% 증가)하고 있지만, 세계 콘텐츠시장 점유율은 약 2.7% 수준에 불과한 상황

(2) 그간의 정책성과 및 향후과제

-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 숙박·출입국·쇼핑 등 관광요소별 애로사항을 해소하고, 관광산업에 대한 세제·금융혜택 등 지원 강화
 - 기존시설을 숙박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신설('11.12), 생활형 숙박시설 근거 마련('12.1)
 - 중국인 관광객 입국 편의를 위해 제주도 무비자 입국 허용, 중국인 복수사증 발급 대상 확대
 - * 복수사증 발급 대상을 현행 본인 이외 배우자, 미성년 자녀로 확대
 - 외국인관광객의 주요 쇼핑장소(명동, 동대문, 강남 등) 인근에 도심 환급창구를 설치('13.7.1)하여 환급절차 편의제고 및 재쇼핑 유도
 - * 환급창구 : 공항(인천·제주·김포·김해), 항구(인천·부산항), 도심환급(서울·부산·제주)
 - 호텔부가세 사후환급, 문화시설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허용('13.12)
 - * 박물관, 관광호텔, 종합유원시설 등 관광시설 투자시 세제 지원
 - 그러나 국제경쟁력 있는 관광지 개발 및 인프라 구축 미흡 등 관광산업의 질적발전이 부족
 - 외국인 관광객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세계 관광시장에서의 수익 점유율은 2000년대 보다 낮은 수준
 - * 세계관광시장에서의 수익 점유율(%): ('00)1.4→('04)1.0→('08)0.7→('12)1.3
 - 콘텐츠 금융지원 체계 선진화, R&D 및 수출 지원, 인재 양성, 저작권 제도 등 콘텐츠산업 육성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 강화
 - 그러나 글로벌 경쟁 속 국내 콘텐츠기업의 영세성*과 금융 애로, R&D 및 핵심인력 부족 등은 지속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
 - * 전체 콘텐츠기업 중 매출 10억원 미만 94%, 종사자 9인 이하 94%
- ⇒ 지속적인 관광·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주요 프로젝트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 및 추가 제도개선에 중점

 - 복합리조트 사업 등 프로젝트별로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원스톱 지원 및 맞춤형 대책 추진
 - 관광숙박시설 설립 등 관광기반을 확충하고 수요자 지향적인 관광자원 개발,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

3. 교육 서비스

(1) 업종 현황

□ 높은 학업성취도에도 불구하고, 대학 등 고등교육 분야에서의 경쟁력은 아직 미흡한 상태

- **중등교육과정에서는 높은 교육열, 공부를 잘하는 것에 대해 큰 가치를 두는 사회적 분위기 등으로 높은 학업성취도 유지**

* OECD 국제학업성취도 평가(PISA, '12년) : (읽기) 3위 (수학) 3위 (과학) 5위

- **고교졸업자의 대학진학율은 높은 수준*이나, 대학교육의 질 제고와 경쟁력 강화**가 지속적으로 요구됨**

* 고교졸업자의 대학진학율(당해고교 졸업자중 진학자 비율, '13년): 70.3%

** IMD 국제경쟁력 평가(대학교육의 경쟁사회요구 부합도, '14년): 53위/60개국

□ 국내에서 제공되는 교육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한 교육수요가 해외소비로 연결

- **약 40억불(4조원) 수준의 유학연수 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, 전체 서비스수지 적자의 상당부분이 유학수지 적자에 기인**

	'06	'07	'08	'09	'10	'11	'12	'13
서비스수지(억불)	△132.1	△132.5	△65.4	△95.9	△142.4	△122.8	△52.1	△79.3
유학연수수지(억불)	△44.9	△49.8	△44.3	△39.6	△44.5	△42.6	△40.8	△37.6

□ 고령화, 일학습병행 등에 따라 **상시적인 교육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확대**

- **직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사내대학(8개교), 산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폴리텍(34개) 등 직업과 학업의 병행기회 확대**

- **인문교육, 학력보완, 직업능력 향상 등을 위한 평생교육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**

* 평생학습 참여율(%) : ('08년)26.4→('09년)28.0→('10년)30.5→('11년)32.4→('12년)35.6

[2] 그간의 정책성과 및 향후과제

□ 경자구역·제주도 등을 중심으로 **다양화·국제화된 교육서비스를**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

○ 경자구역에 **외국교육기관 유치 성과 달성**

* 프레드리히알렉산더대('11.3월), 한국뉴욕주립대('12.3월), 조지메이슨대('14.3월), 채드윅국제학교('10.9월), 대구국제학교('10.8월) /유타대, 겐트대 개교예정

○ 제주 영어교육도시에 **해외 초중등 기관을 유치**

* NLCS-Jeju('12년, 영국), 브랭섬홀(BHA-Asia,'12년, 캐나다)

○ 그러나, 해외 유학수요 흡수·아시아 교육허브 달성을 위한 **외국교육기관 유치가 아직 본격화되지 못함**

- 국내에 유치된 외국교육기관은 세계 100위권으로, 존스홉킨스·인시아드(싱가폴), 시카고 MBA(홍콩) 등을 유치한 주변국과 대비

□ **대학의 연구역량 제고 및 산학협력 활성화** 등을 위한 기반 조성 (산학협력법 제정 등, '03년)

○ 산학협력 선도대학(LINC) 선정, 산학협력중점교수 선임, 대학 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 추진

○ 산학협력단 등의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, 성공사례 창출 등 내실화 지연

- 대학의 연구역량 제고 및 산학협력 활성화 등을 통한 **대학기술의 사업·창업화,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인력양성 미흡**

⇒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**맞춤형 서비스를 제공**하여 국내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교육수지 적자를 해소

○ **우수 외국교육기관을 유치**하여 글로벌 인재 양성을 뒷받침

○ **대학의 연구역량 강화·산학협력, 온라인 교육기회 확대** 등을 통해 양질의 교육서비스에의 접근성을 제고

4. 금융 서비스

(1) 업종 현황

- (현황) 자금중개기능을 수행하는 금융은 총부가가치 비중이 6.7%('12년)이며 최근 독자산업으로서 역할이 강조
 - 금융업 종사자수는 '13년말 기준 86.4만명으로 총고용의 3.4% 차지
 - * 금융업 고용비중(% , OECD) : 미국 4.2, 프랑스 3.3, 네덜란드 3.4
 - '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전세계적으로 금융업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고 수익성과 성장성이 정체 국면
 - (평가) 우리 금융은 낮은 방식에 안주하고 규제에 얽매이면서 본연의 실물지원 기능과 부가가치 창출 기능이 미흡
 - 담보·보증에 의존한 보수적인 영업관행으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금융의 지원기반이 미흡
 - 새로운 시장개척과 혁신 보다는 단순중개 및 이자수익 위주의 영업으로 수익성이 낮고, 글로벌 경쟁력이 부족
 - 반복되는 금융부실·사고, 불완전판매 등으로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서 금융권 신뢰가 하락
- ⇒ 금융회사와 정부가 합심하여 실물지원 기능 확대와 고부가가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노력



[2] 그간의 정책성과 및 향후과제

- (정책성과) 금융시스템 안정 노력 가운데 우리금융 민영화 등 묵은 과제 해결과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('13.11월)을 마련
 - 현장중심으로 법령규제 뿐만 아니라 숨은규제 개혁 추진('14.7월)
 - ① 저축은행 구조조정 마무리, 가계부채 및 기업부실 등 잠재 위험을 지속 관리하는 한편, 바젤Ⅲ 도입 등을 차질없이 시행
 - ②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전담기구 신설, 공시제도 개선 및 분식 회계 제재 강화 등 투명성·공정성 제고 노력
 - ③ M&A 활성화, 사모펀드 규제 개선 등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기능 제고
 - ④ 국민들의 노후설계 지원, 사적연금시장 육성 등을 통한 100세 시대 대비 금융인프라 조성 및 신금융수요 창출
 - ⑤ 연대보증 폐지, 기술평가시스템 등 중소·벤처·창업 기업 금융 지원 시스템 설계
 - ⑥ 상시적인 금융규제 개혁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부작용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 등 규율 강화 병행

⇒ 그간 정부가 설계하고 구축한 제도와 시스템을 바탕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실천과 점점에 만전

- 기술금융·창업 활성화, 성장사다리 펀드·유망서비스산업 지원 펀드 확대, 유망기업 상장 지원, 퇴직연금제도 개선 및 금융 규제 개혁으로 기업과 국민에 대한 실질적인 자금공급을 확대
- 특히, 금융현장에서 실물지원 기능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금융회사 감독·평가 체계 등을 창조금융 성과와 연계될 수 있도록 개편 추진

5. 물류 서비스

(1) 업종 현황

- 물류산업은 종전의 제조업 지원 기능에서 벗어나 **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간산업**으로의 발전이 요구되는 상황
 - 세계 물류시장은 '13년 3.3조\$ 규모로 추정되며, 생산의 글로벌화, FTA확산 등으로 **지속 확대중인 새로운 성장 시장***
 - * '20년에는 약 8.1조\$로 성장 전망 (Datamonitor社, '13.12월)
 - 특히, 우리나라와 같이 **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**('12년기준 94.5%)에게는 **수출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**
- 국내 물류시장은 무역규모 증가 등에 따라 최근 '07~'12년간 **연평균 6.3%의 성장률**을 기록하면서 **빠른 성장세** 지속
 - '12년 기준으로 **총 매출 92.5조원** 수준이며, **약 17만개 업체**에서 **57.3만명을 고용**(업체당 평균 매출액 5.3억원, 평균 종사자수 3.4명)

	화물운송업	물류시설운영업	물류서비스업
매출액(92.5조원)	79.7조원(86.1%)	2.1(2.3%)	10.7(11.6%)
고용(57.3만명)	48.6만명(84.8%)	1.3(2.3%)	7.4(12.9%)

* 자료: 국토부, 물류산업은 화물운송업, 물류시설운영업(창고 등), 물류서비스업(주선, 컨설팅 등)으로 구분

- 세계은행(WB) 발표 **우리나라 물류경쟁력 순위도 점진적으로 상승**
 - * 물류경쟁력 지수(Logistics Performance Index) : ('07)25위 → ('09)23위 → ('11·'13)21위
- 그러나, 대부분 전문 물류서비스보다는 **단순 운송이나 보관서비스 제공에 그치고***, **물류비도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아직 높은 수준****
 - * 전문물류기업 활용 3자물류 비율('13년): 한국 65%, 일본 80%, 유럽 90%
 - ** GDP대비 국가 물류비('10년): 한국 11.1%, 일본 9.0%, 미국 8.0%

(2) 그간의 정책성과 및 향후과제

- 동북아 물류중심 및 물류비 절감을 위해 공·항만 건설 등 H/W 측면의 물류 인프라 구축에 중점
 - 세계의 제조공장으로 부상한 중국 물량 유치를 위해 인천공항, 부산항, 광양항 등 대형 글로벌 공항·항만 건설 추진
 - * 공항만 배후단지에 경제자유구역을 건설하여 동북아 물류중심 추진
 - * (컨테이너항) 부산항 세계 5위('03년~), (항공물동량) 인천공항 세계 3위('13년)
 - 주요 거점별 내륙물류기지* 건설 등 물류시설을 확충하고, 5개 항만에 600만㎡의 항만배후단지를 공급하여 125개 기업 유치
 - * 수도권 146만㎡, 부산권 127만㎡, 호남권 52만㎡, 중부권 48만㎡ 등
 - 인프라 구축이 진전됨에 따라 물류산업 육성으로 정책의 중점을 전환하고, 종합물류기업 인증제('06년) 도입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추진
- 우리 물류기업은 전문화·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부족하고, 화주-물류기업/운송업체-차주 간 불공정 거래관행도 상존
 - 또한, 국내의 3자물류 시장은 협소하고, 해외진출 등 새로운 시장 확대는 미흡하며, 물류인프라의 활용도 낮은 수준

⇒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비 절감을 위해 가시적인 성과 창출이 가능하고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발굴 추진

- 현장대기 프로젝트별 규제완화, 절차개선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한 투자애로 해소로 민간투자 활성화
-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물류기업 육성, 택배산업 선진화, 물류인프라의 활용도 제고를 통해 산업성장기반 확충

6. 소프트웨어 서비스

(1) 업종 현황

□ SW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효과 및 부가가치율이 높은 유망한 분야

* 취업유발계수는 12.5명으로 제조업(9명)의 1.4배이며, 부가가치율(47.8%)은 제조업(21.1%)의 2.3배('11년)

○ 국내 SW 생산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, SW 수출실적도 증가 추세를 보이는 등 외형적으로 성장

* 국내 SW생산액(조원): ('08)36.8→('09)38.4→('10)41.9→('11)44.7→('12)48.0

** SW수출액(억달러): ('08)9.2→('09)10.2→('10)13.3→('11)14.3→('12)24.7

○ 그러나 HW시장에 비해 여전히 작은 SW시장 비중*, SW기업의 영세성**, 고급인력 부족*** 등 산업 구조적 문제 상존

* ICT산업 내 HW/SW시장 비중(%): (세계평균)71.2/28.8, (한국) 85.1/14.9

** SW기업의 1인당 매출액(억원): (국내)1.45, (미국계)3.6, (비미국계)2.6

*** '17년까지 약 8만명의 고급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('13.10월, SW혁신전략)

□ 이는 우리 SW산업 내에 만연한 불합리한 거래관행 등으로 생태계가 선순환하지 못하는 데 기인

○ 비용절감 위주의 사업 운영으로 단가 후려치기, 정품 SW 이용 문화 미정착 등 불공정 거래 관행 만연

○ 잦은 야근 등 SW 개발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로 인해 SW산업에 우수인력 진입 기피

○ 자본·기술축적이 이루어지지 않아 세계 200대 패키지SW 기업에 국내 기업이 없고, 수출비중도 7.8%('12년)에 불과한 내수형 산업으로 고착

⇒ [불공정 거래관행→우수인력 기피→내수중심의 시장 구조→과당경쟁→기업수익 악화·재투자 미흡→우수 인력 기피]의 악순환 발생

[2] 그간의 정책성과 및 향후과제

- **건전한 SW산업 생태계 조성 및 다른 산업과 SW의 융합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**
 - SW산업 발전방안('08.10월), SW강국 도약전략('10.2월) 등 SW 융합을 통한 기존 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
 - * SW융합 핵심기술 확보, 임베디드 SW 성장기반 구축, WBS(World Best SW) R&D사업 추진 등
 - 특히 현 정부 출범 후 SW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요소로 인식하고 SW혁신전략('13.10월),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('13.12월), SW중심사회 실현 전략*('14.7월) 등을 추진 중
 - * 초·중학교에서 SW 필수이수 및 고등학교에서 정보과목을 일반선택으로 전환, SW 불법 복제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, 공공 SW시장 하도급 제도, 개발자 보수체계 개선 등
- 그러나 SW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세계시장 대비 국내 SW시장의 성장이 정체
 - * 세계 SW시장 대비 국내 시장 비중(%),IDC: ('08)1.8 → ('09)2.0 → ('10)2.2 → ('11)2.2 → ('12)2.2

- ⇒ 'SW중심사회 실현 전략 보고대회'에서 발표된 의견을 반영하여 SW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·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프로젝트 과제 및 제도 개선 추진
 - SW융합 클러스터 조성, 클라우드·사물인터넷 분야 등 개방형 플랫폼 개발을 통한 선도적 시장 창출 지원
 - SW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중소기업 SW의 시장 확대
 - 발주 프로세스 효율화, 발주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보강으로 건전한 SW 생태계 조성 지원